

##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김 해 숙                      임 남 열                      이 혜 진\*

광주스마일센터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본 연구는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경험을 이해하기 위한 현상학적 연구이다. 연구 참여자는 연구 목적에 동의하고 면담에서 자신의 경험을 언어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9명의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이었다. 살인사건은 면담 시점으로부터 6개월~4년 전에 발생했으며 면담을 실시할 당시에는 모든 사건에 대한 법적 판결이 내려진 후였다. 면담 자료는 Colaizzi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연구자와 자료분석자 2명, 그리고 본 연구 주제를 접해 본 적이 없는 전문가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미있는 문장 및 구 472개가 선택되었으며, 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용어로 구성된 의미 48개, 주제 모음 24개, 부상 주제 16개, 범주 6개로 조직화되었다. 6개의 범주는 망자, 나, 가족, 타인/세상, 가해자/가해자 가족, 현실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었으며, 각 범주별로 참여자들의 경험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다. 본 연구는 국내에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 대한 선행 연구를 찾아보기 힘든 실정에서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통해 이들의 경험을 본질적이고 총체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었다는데 그 의의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제한점과 논의점을 제시하였다.

주제어 :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 현상학적 연구, 심층면담, Colaizzi 기법

\* 본 논문은 김해숙의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수정, 정리한 것임.

† 교신저자: 이혜진,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61186) 광주광역시 북구 용봉로 77

Tel : 062-530-2650, E-mail : [hjl2013@chonnam.ac.kr](mailto:hjl2013@chonnam.ac.kr)

우리나라의 경우 살인미수를 포함한 살인사건이 1년에 평균 1,000여건을 넘어서고 있다(경찰청, 2017). 일반적으로 한건의 살인사건으로 피해를 당하는 친인척의 수는 최소 7-10명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살인사건 피해자의 친구, 이웃, 동료들까지 포함시킨다면 그 수는 몇 배로 증가할 것이다(Heidi, Alyssa, Alesia, Benjamin, & Dean, 2009; Redmond, 1989). 살인사건 피해로 사망한 사람의 친구, 가족,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했던 사람들을 영미권에서는 ‘살인생존자들(homicide survivors)’, 혹은 ‘공동피해자들(co-victims)’이라는 용어로 칭한다(Heidi et al., 2009).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을 칭하는 학계의 공식 용어가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또한 거의 전무한 상태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 이루어진 살인사건 관련 연구는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강은영, 강형민, 2008; 김상희, 이태원, 1991; 박형민, 2003)과 같이 가해 행위 및 가해자에게 초점이 맞추어진 것이 대부분이다. 즉, 살인사건 공동피해자라 할 수 있는 직접 피해자의 친구, 이웃, 동료는 차치하고서라도 사건으로 인해 가족을 잃은 유가족이 삶 속에서 경험하는 것들의 특수성과 그 양상에 대한 기본적인 연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유가족은 범죄 사건의 직접적인 피해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사법체계 뿐 아니라 연구 영역에서도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가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실질적인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2008년 전국 범죄피해자지원연합회가 창설되면서부터이다. 성폭력, 가정폭력 등 아동과 여성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심리치료 전문기관은 이보다 훨씬 앞선 2000년을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현재도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강력범죄 사건의 피해자와 가족에 대한 심리치료 기관은 범죄피해자보호법이 제정되고 나서야 2010년에 최초로 개소(서울스마일센터)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스마일센터는 각 지방 검찰청 단위로 개소하고 있는 상태이다. 강력범죄 피해가 비단 오늘, 내일의 문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0년에야 관련 심리치료 기관을 개소했다는 점은 지원이 절실한 강력범죄 피해자가 우리나라에서는 얼마나 오랫동안 무관심의 대상이었는지 추측해볼 수 있는 부분이다. 더불어 강력범죄 피해자들이 그동안 연구자들의 관심에서 외면당했던 것도 이러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으리라 판단된다.

외국의 선행 연구들에 의하면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은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유사한 심리적 문제뿐만 아니라 독특한 심리적인 어려움으로 고통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의 경우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들과 유사하게 경제적인 스트레스와 지역사회의 낙인, 유사한 범죄 피해가 재발할 것에 대한 공포, 사건을 떠오르게 하는 대상에 대한 불안,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세상에 대한 부정적인 믿음, 사건과 관련된 죄책감과 책임감 등을 호소한다. 그러나 다른 강력범죄 피해자들과는 달리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의 경우 언론과 사법체계에 의한 2차 피해에 더 많이 노출되며, 가해자에 대한 복수심이 크다(Heidi et al., 2009; Hertz, Prothrow-Stith, & Chery, 2005). 특히, 살인사건은 강력사건 중에서도 가장 심각한 범죄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강간이나 폭력사건, 혹은 여타의 외상사건 피해와 다르다. 첫째,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은 누군가가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그리고 폭력적

인 방식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죽였다는 사실에 직면하게 된다. 이로 인해 이들은 가해자에 대한 분노와 복수심에 사로잡힌다. 둘째, 살인은 공적 사건이다. 따라서 유가족의 사생활이 공공연하게 노출되거나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따라 많은 유가족들은 사건 발생 이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 내용이 알려짐에 따라 2차 피해에 직면하게 된다. 셋째, 살인은 국가 이념에 반하는 극단적인 범죄 행위로 유가족의 욕구보다는 정부의 방침이 우선시 된다. 따라서 유가족은 제 3자로 취급당하기 일쑤다(Amour, 2002). 이 과정에서 많은 유가족은 국가와 자신이 속한 지역 사회에 대한 극심한 분노 및 불신감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외 연구들의 경우 대부분 사건 후 유가족이 경험하는 정신장애 증상에 초점을 맞춰왔다. 기존 연구들에 의하면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은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및 우울장애, 불안장애와 같은 정신과적 증상들을 경험할 위험성이 높다(Amick-McMullan, Kilpatrick, & Rensnick, 1991; Amick-McMullan, Kilpatrick, Veronen, & Smith, 1989; Freedy, Resnick, Kilpatrick, Danksy, & Tidwell, 1994; Murphy, Johnson, Wu, Fan, & Lohan, 2003). 특히, 이들의 경우 살인사건이 아닌 다른 강력범죄 피해 또는 자살이나 사고로 가족을 잃은 경우에 비해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발병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Murphy, Johnson, Wu, Fan, & Lohan, 2003). 이들이 흔히 보고하는 증상에는 사망 당시의 망자의 모습에 대한 침습적인 사고, 망자를 떠올리게 하는 것들을 회피하는 행동, 복수에 대한 몰두, 무감각, 강한 애도 등이 있다(Heidi et al., 2009).

그러나 위와 같은 연구들은 대부분 특정 척도를 바탕으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의 증상들을 제시하는 것에 그쳐 이들이 실제 삶에서 경험하는 고통들을 생생하게 담아내지 못했다는 제한점을 지닌다. 더욱이 연구자들이 의도하든 그렇지 않았든 간에 결과적으로 유가족들의 반응을 병리적인 모델의 틀로 설명하는 결과를 낳았으며, 유가족들이 사건 이후 자신의 삶 속에서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조명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여 살인사건 피해 이후 유가족들이 어떠한 심리적 경험을 하는지를 이들의 삶의 언어를 통해 확인함으로써 이들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고자 하였다. 현상학적 방법은 질적 연구방법의 하나로 특정한 개념이나 현상에 대한 개인의 경험의 의미를 기술하며, 이러한 경험에서 드러나는 의식구조를 탐색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다. 즉, 현상학의 목적은 현상의 본질을 이해하려는 것으로 현상학은 연구방법일 뿐만 아니라 철학이라고 할 수 있다(Cohen, 1987; Omery, 1983; van Manen, 1984). 따라서 연구자는 관심을 두고 있는 현상을 겪은 사람들의 자료를 모으고 그들이 경험한 것의 본질에 대해 복합적으로 기술해야 한다(Moustakas, 1994).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독특한 심리적 경험의 본질적인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심층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이를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 대한 연구 및 개입 방법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 방 법

연구참여자

본 연구는 법무부에서 위탁 운영하는 강력 범죄피해자 트라우마 통합지원기관인 스마일 센터에 방문하여 개별심리치료를 받은 바 있는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였다. 참여자는 총 9명으로 이들은 모두 연구에 동의한 사람들이었다. 다만, 아동과 청소년은 연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참여자를 성인으로 한정하는 이유는 아동과 청소년의 경우 언어 발달의 한계로 자신의 경험을 풍부하게 전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뿐만 아니라 가족을 잃은 후 경험하는 심리적인 고통을 표현하고 나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을 스스로 소화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감안한 것이었다.

질적연구는 면담 과정부터 기술 단계에 이르기까지 참여자들에 대한 세심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하기 전 A기관 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서 연구 승인을 받았으며 해당 절차와 연구 윤리

를 철저하게 준수하며 연구를 진행하였다.

참여자들의 인구통계학적 특성은 표 1에 제시되어 있다. 이들은 1지역과 2지역 거주자로 30대 1명, 40대 3명, 50대 1명, 60대 3명, 70대 1명 이었다. 살인사건은 면담 시점으로부터 6개월에서 4년 전에 발생하였으며, 5건의 사건 모두 형사소송 결과 법적인 판결이 내려진 후였다.

자료수집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하고자 하는 것이 정말로 어떤 것인가를 밝히는 것이므로 질문은 개인의 체험이 그대로 표현될 수 있도록 분명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van Manen, 1990/1994).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살인이나 사건과 같은 법률적 용어가 참여자들에게 심한 거부감과 상처를 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그 일’, ‘그 때’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또한 망자에 대한 호칭은 참여자와의

표 1. 연구참여자의 인구학적 특성

표기	성별	연구 참여자 연령대	피해자 (망자) 연령대	피해자 (망자)와의 관계	가해자	사건 발생 후 경과된 시간	재판 결과
가	여	60대	40대	아들	피해자의 동업자	3년 2개월	(최종)17년
나	여	40대		남편			
다	남	70대	30대	딸	피해자의 남편	6개월	(최종)18년
라	여	60대		딸			
마	여	50대	10대	딸	모르는 사람	3년	(최종)15년
바	남	40대	10대	딸	피해자의 남자친구	1년	(최종)10년
사	여	40대		딸			
아	여	30대	60대	아버지	동네지인	1년 6개월	(최종)15년
자	여	60대		남편			

관계에 따라 ‘작고하신 아드님’, ‘따님’, ‘아버님’ 등으로 명명하였다.

심층면담은 “그 일이 있는 후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와 같은 폭넓은 개방형 질문으로 실시하였다. 참여자가 구술한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주시겠습니까?” 등의 질문을 하였다.

모든 참여자와 심층면담을 시작하기 전에 면담내용을 녹음하는 것에 대해 우선적으로 동의를 받았다. 그러나 참여자가 녹음 장비를 의식하여 면담 과정이 부자연스러워지고 진술 내용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을 감안해 녹음 장비를 연구자의 호주머니 속에 넣어 두는 등 눈에 띄지 않는 곳에 놓은 상태로 면담을 실시하였다.

참여자들은 사건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삶의 다양한 부분에서 경험했던 것들을 비교적 차분하고 담담하게 풀어냈다. 자신의 삶에서 망자가 지녔던 의미, 망자가 떠난 후의 주변의 변화를 설명하며 깊은 숨을 토해내거나 눈물을 글썽일 때는 연구자도 공감 반응을 보였다. 가해자와 법적 처리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는 목소리가 격앙되거나 물이나 차를 여러 차례 마시기도 하였다. 참여자들은 면담이 끝난 뒤 “내 하소연을 들어줘서 고맙다”, “말하고 나니 속이 후련하다”, “어디 가서 누구에게 이런 말을 하겠는가”라고 하며 자신의 심경을 전했다. 그러나 면담 다음날 연구자가 전화를 걸어 면담에 대한 평가 및 안부를 물었을 때는 “망자가 생각나고 그리워 잠을 자지 못했다”, “내가 그럴 줄은 몰랐는데, 많이 괜찮아졌다고 생각했는데 심란하고 힘들었다”고 말하는 등 사건을 회상하고 이를 타인에게 노출하는 일 자체가 힘든 작업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경우 연구자는 면담 시작 전 고지했던 내용을 다시 주지시키며, 참여자가 원하는 경우 개별심리치료를 받을 수 있음을 상기시켰으나 요청한 참여자는 없었다.

면담내용은 면담 후 빠른 시일 내에 필사하였으며, 내용 상 확인이 필요한 부분은 참여자가 동의한 경우 추가 면담을 진행하였으나 재 만남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화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다.

### 분석방법

심층면담자료의 분석은 Colaizzi의 방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Colaizzi, 1978). 그가 제시한 분석 방법은 참여자가 진술한 내용을 연구자가 주관적인 편견을 배제한 채 기술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구체적인 분석 방법은 참여자가 제공한 내용 중 의미가 있는 문장이나 문구를 추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일반적인 추상적인 의미를 구성해 주제로 범주화한 후에 경험의 본질적인 구조를 기술한다. 또한 경험을 본질적 구조로 범주화한 것의 타당성을 참여자를 통해 다시 확인하는데 이러한 과정은 주제에 반영된다. Colaizzi의 자료분석 방법은 현상학적 방법 중 유일하게 참여자에게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결과가 그들의 경험을 잘 반영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자료분석의 타당도를 확보하는데 심혈을 기울인다(Polit & Beck, 2010).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면담자료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녹취록을 반복하여 읽은 후 유가족의 경험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문구나 문장을 추출하였다. 이를 위해 연구자뿐만 아니라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 대해 최소 3년 이상 심리치료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자료분석자 2명 또한 동일한 면담자료를 읽고 유가족의 진술 중 의미 있는 문구나 문장을 각자 독립적으로 추출하였다. 연구자는 임상심리전문가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을 포함한 강력범죄 피해자를 지원하는 기관에서 12년간 심리치료 업무를 담당해 왔다. 자료분석자의 경우 두 명 중 한명은 심리학 석사로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자격을 소지하고 있으며, 다른 한명은 심리학 박사과정을 수료한 임상심리전문가이다. 아울러, 자료분석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본 연구와 무관한 자문가에게 면담자료를 제시한 후 독자적으로 분석해줄 것을 요청하였다. 자문가는 Colaizzi 자료분석 방법을 사용한 현상학적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후 대학교와 관련 학회에서 질적연구 방법론을 강의한 바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에 대한 지식은 전무한 상태였다. 이와 같이 초기 분석 단계를 연구자를 포함한 3명의 자료분석자와 1명의 자문가가 개별적으로 진행한 후 연구자들 간 수차례의 논의를 통해 공통 내용을 추출하였으며 이 내용들을 주제별로 묶어 범주화하였다. 또한 구성된 내용이 유가족의 경험의 본질에 적합한지 확인하기 위해 이를 질적연구 방법론을 지도하는 심리학과 교수와 질적연구 모임에 참여하는 3명의 심리학과 박사과정 수료생들에게 별도로 검토를 받았다.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 구성된 의미와 기술한 내용을 최종적으로 참여자들에게 보여준 후 확인을 받았다.

#### 연구의 엄격성 및 타당성

본 연구는 질적연구에서 엄격성을 평가하는 Lincoln과 Guba(1985)의 기준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그리고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true value)란 연구에서 발견된 내용의 정확성을 의미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들의 진술과 연구 결과가 일치하는지 반복해서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또한 참여자들의 진술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다년간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과 심리치료 작업을 한 바 있는 연구자, 자료분석자, 제3의 자문가, 그리고 질적연구 모임에 참여한 이들과 수차례의 논의를 거친 후 연구 결과를 도출해냈다. 마지막으로 참여자들에게 자신들의 실제 경험과 연구결과가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거쳤다.

둘째, 적용성(applicability)은 연구 결과를 다른 상황에 일반화시킬 수 있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참여자의 진술이 반복되어 새로운 자료가 드러나지 않을 때까지 자료 수집을 계속하였다. 참여자를 한명씩 면담 한 후 자료를 분석하던 중 8번째 참여자부터는 앞서 면담한 참여자들의 경험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양상이 9번째 참여자에게도 재확인됨으로써 자료가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판단되어 자료수집을 중단했다. 참여자의 경험 가운데 일부는 개인적인 성향, 가족 관계 등의 차이로 인한 개인적인 차이가 있었다. 그러나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경험의 총체적인 내용에는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참여자의 선정 기준이 일치하는 조건에서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공통적인 경험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일관성(consistency)은 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얻은 결과의 신뢰도를 의미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 자료수집 및 분석 과정을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연구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를 포함

한 총 3명의 자료분석가와 본 연구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문한 박사급 자문가가 각각 별도로 작업을 한 뒤 결과를 비교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매우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넷째, 중립성(neutrality)은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으로 연구과정과 결과가 모든 편견에서 벗어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본인의 임상적 경험과 지식이 연구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해 연구 시작과 동시에 연구자의 선이해와 편견에 대한 괄호치기(bracketing) 작업을 끊임없이하며 면담과정에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하기 위해 노력했다. 또한 앞선 참여자와 유사한 경험을 이끌어내기 위한 유도질문을 철저히 배제했다. 자료분석 과정에서는 연구자 외에도 2인의 자료분석자, 제 3의 자문가, 그리고 심리학과 교수 및 질적연구 모임 참여자들에게 분석의 매 단계별로 검토를 받았다.

## 결 과

Colaizzi(1978)가 제시한 절차에 따라 심층 면담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의미있는 문장 및 구 472개가 선택되었고 이를 일반적인 진술로 만들어 의미구성 48개를 도출 하였다. 이를 다시 주제 모음 24개, 부상 주제 16개, 범주 6개로 조직화하였다(표 2). 본 연구결과 드러난 참여자들의 심리적 경험의 본질적 구조를 Colaizzi가 제시한 방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기술하였다.

### 범주 1 : 망자

참여자들은 사건에 대한 소식을 들은 후 상당한 시간이 흐른 현재도 망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다. 이들은 매일 망자의 부재를 느끼며 사무치는 그리움과 아픔에 시달린다. 이들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시간도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현재도, 미래도 여전히 망자를 그리워하고 아파할 것이라고 보고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족들은 정서적 고통을 견뎌내며 망자와 사건을 분리한 채 망자에 대한 좋은 기억과 함께 삶을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술한 바와 같다.

### 부상주제 1 : 부인

**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 본 연구에 참여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 9명은 모두 망자가 사망했다는 사실을 인지한 후에도 망자의 사망을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며 부인한다. 이들은 망자가 사망했으며, 더 이상 곁에 없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여전히 망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고, 전화를 하면 받을 것만 같은 느낌에 사로잡혔다. 이러한 양상을 잘 드러내주는 대표적인 진술들은 아래와 같다. 이 중 많은 참여자들은 참여자(나)와 같이 망자와 닮은 사람을 보고 정신없이 뒤쫓다가 망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한 후 망자의 부재를 절절하게 느끼며 고통스러워하기도 한다.

“아직도 진짜가 아닌 것 같애. 지금도 사진보면 옆에 있는 것 같애요. 문 열고 어머니~하고 들어올 것 같고... 3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안 믿겨. 그렇게 간 게... 그

표 2. 심리적 경험의 본질적 구조

의미구성	주제모음 (Clusters of themes)	부상주제 (Emergent themes)	범주 (Categ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망자의 죽음을 인정하고 싶지 않은 마음</li> <li>- 평생 지속될 것 같은 망자에 대한 그리움</li> <li>- 생전에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li> <li>- 사건을 상기시키는 자극(뉴스 등)을 피함</li> <li>- 기일, 축일, 망자의 동년배 등 망자를 생각나게 하는 특별한 날에는 일어난 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짐</li> <li>- 있는 것이 아니라 감춰두고 사는 세월</li> <li>- 새롭게록 더 아픈 시간들</li> <li>- 좋은 기억과 추억으로 일상에서 순간순간 함께하는 망자</li> <li>- 일상에서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함</li> <li>- 여전히 이어지는 일상에 대한 미안함</li> <li>- 내 닦인 것만 같음</li> <li>- 사건 당시 망자의 아픔, 공포 등을 떠올리며 괴로움</li> <li>- 노력한 내 삶의 결과가 망자의 죽음</li> <li>- 사건 당일 망자가 다르게 행동했다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li> <li>- 사건 관련 자신의 행동과 대처에 대한 후회</li> <li>- 사건에 대해 떠올리거나 관련된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노력함</li> <li>- 다른 활동을 찾음</li> <li>-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갖게 됨</li> <li>- 삶의 방식, 행동, 태도의 변화</li> <li>- 종교를 통해 힘을 얻음</li> <li>- 남겨진 가족에 대한 걱정과 아픔</li> <li>- 망자를 그리워하는 가족들을 보며 마음이 아픔</li> <li>- 망자나 사건에 대해 표현하지 않고 평소처럼(사건 이전) 살아감</li> <li>- 서로 간에 모르는 척/아무 일 없었던 듯 그렇게 살아감</li> </ul>	<p>받아들일 수 없는 죽음</p> <p>현존하는(현재) 아픔</p> <p>지속될(미래) 아픔</p> <p>망자와 함께하는 일상</p> <p>일상에서 느끼는 고통</p> <p>망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동일시</p> <p>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p> <p>사건 관련 (대처)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p> <p>건너내기 위한 노력</p> <p>사건 이후 가치관의 변화</p> <p>남겨진 가족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p> <p>남겨진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p>	<p>부인</p> <p>아픔</p> <p>함께 살아가기</p> <p>고통</p> <p>후회</p> <p>대처</p> <p>아픔/배려</p>	<p>망자</p> <p>나</p> <p>가족</p>

표 2. 심리적 고통의 본질적 구조 (계속)

의미구성	주제모음 (Clusters of themes)	부상주제 (Emergent themes)	범주 (Categories)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남겨진 가족에게 불행이 반복될지 모른다는 걱정과 불안감</li> <li>- 남겨진 가족의 안전을 반복 확인함</li> </ul>	남겨진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	걱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가족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노력이 증가함</li> <li>- 가족들과 망자에 대한 추억, 기억, 감정을 표현하고 공유함</li> <li>- 가족(친인척)의 관심과 도움으로 하루하루 살아갈/극복할 힘과 위로를 얻게 됨</li> </ul>	가족 내 응집력 증가	응집력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상은 위험하다는 생각</li> <li>- 사람이 무섭다. 믿을 수 없다는 생각</li> <li>- 사건에 대한 단순한 호기심으로 자꾸 묻는 사람들</li> <li>- 잊을 수 없는 사람을 잊으라고 참 쉽게 말하는 사람들</li> <li>- 피해자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에게 대한 고마움</li> <li>- 자신을 보살펴주는 타인들에게 살면서 갚아나가기겠다는 마음</li> <li>- 가해자에 대한 분노, 원망, 미움</li> <li>- 가해자가 죄값을 치르기를 바람(인과응보)</li> <li>-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생각함</li> <li>- 자식을 살인자로 키운 것에 대한 원망과 미움</li> <li>- 사건에 대해 책임지지 않음에 대한 분노</li> <li>- 가해자가 보복, 해코지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li> <li>- 살인자를 돌봐주는 법에 대한 분노</li> <li>- 여러 가지 이유로 감형을 시켜주는 법</li> <li>- 망자의 한은 알아주지 않는 법</li> <li>-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고 억울함</li> <li>- 홀로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대한 막막함</li> <li>- 망자 사망 후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 문제들(빚, 재산 등)에 직면함</li> <li>- 경제적,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과 만족감</li> </ul>	<p>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신</p> <p>타인으로 인한 상처</p> <p>타인으로 인해 힘을 얻음</p> <p>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p> <p>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p> <p>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p> <p>가해자 중심인 법/제도에 대한 불만</p> <p>법의 한계를 실감함</p> <p>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p> <p>경제적, 심리적 지원제도의 필요성을 느낌</p>	<p>불신/상처</p> <p>위로 받음</p> <p>부정적인 감정</p> <p>두려움</p> <p>법/제도에 대한 불만</p> <p>현실적인 문제들</p> <p>현실적인 어려움</p> <p>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p>	<p>타인/세상</p> <p>가해자/가해자의 가족</p>

렇게 갈 사람이 아닌데... 아직도 어머니하고 웃을 것 같고...(눈물)(참여자 가)

“지난번에 마트에 갔는데, (망자)랑 똑같이 생긴 사람이 지나가는 거예요. 걷는 모습도 똑같고, 가방 든 것도 똑같고... 진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순간 정신을 놓고 미친년처럼 그 사람 뒤를 따라갔어요. 진짜 미친년이요. 오빠~ 하고 외치는데 말이 속으로만 들어가고 입 밖으로는 안 나오는 거예요. 한참 녀을 놓고 따라가는데 그 사람이 순간 저를 보는데, 아니구나...(눈물).”(참여자 나)

“(망자)가 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고... 전화하면 받을 것 같고... 아직도 그렇게 간 게 안 믿겨. 그냥 꿈을 꾸는 것 같애. 악몽... 우리 애들 말처럼 여행 갔다가 올 것 같고 아직도 그래요.(눈물)(참여자 라)

**부상주제 2 : 아픔**

**현존하는(현재) 아픔.** 참여자들은 일상생활 속에서 망자를 그리워하며 망자의 빈자리를 느낀다. 이들은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망자가 생각이나 마음이 아프고, 망자의 한스러운 삶이 불쌍해 하루에 세 번 정도는 울어야 숨을 쉬고 살 수 있다고 말할 만큼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낸다.

“둘이 밥 먹다가도 뭐 먹을라고 하면 그 애가 생각나서 뭐를 하지를 못 하겠어. 우리가 느낄 때는 똑같은 반찬인데 맛이 없어... 내 새끼 얼마나 먹고 싶을까... 이거를 얼마나 좋아하는데.. 내가 못해줘서 어떻게 살까.. 하루에 세 번도 넘게 생각해...

그러니 어떻게 먹고, 어떻게 잠을 자. 불쌍해... 너무 불쌍해... 죽겠어(가슴을 치며 통곡)... 언제 내가 너를 잊고 살겠냐... 내가 죽어야 너를 잊지... 절대로 나는 못잊겠네...”(참여자 라)

“나는 하루 3번 정도는 퍽퍽 울어야 산다. 안 그러면 가슴이 막혀서 눈물로라도 퍼질러야 분한거 풀고 산다... 어떻게 살겠냐...”(참여자 라)

망자에 대한 채워질 수 없는 그리움만큼 생전에 망자에게 더 잘해주지 못한 미안함이 참여자들을 힘들게 한다. 참여자(바)는 망자에게 화내고 짜증냈던 일들을 떠올리며 미안함을, 참여자(사)는 생전에 더 맛있는 것을 해 먹이지 못한 것에 대한 미안함을 표현하였다.

“내가 좀 더 노력할걸, 배려할걸... 예전에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안하고, 항상 미안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안하죠. 내가 더 잘해줬어야 되고...(망자)한테 잘해줬어야 되지 않나... 항상 자책하고 있고...”(참여자 바)

“가기 전에 마지막에는 맨 김치 볶음밥만 먹었는데.. ‘너는 엄마가 김치볶음밥이냐’ 그랬는데... 그게 너무 미안해요. 더 잘 먹일걸...”(참여자 사)

참여자들은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아픔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망자의 사건을 상기시킬만한 뉴스나 사건 장소와 같은 사건 관련 자극들을 피하고자 노력한다. 이를 통해 사건과 관련된 생각들을 의식적으로 하지 않게 되기

를 바란다.

“뉴스뿐만 아니라 신문에서 사건, 사고 이런 것들 보면 생각도 한 번씩 나기도 하고 그래요. 되도록 그런 걸 아예 안 보려고 하고 있죠. TV에서나 어떤 공포스러운 거 아니면 영화도 그렇겠지만, 뉴스에서도 사건, 사고 있으면 안 봐지게 되더라고요. 집사람도 마찬가지고. 그런거에 대해서 생각도 하기 싫고 일부러 안 봐지게 되더라고요. 보면 생각나니까, 그런거 보면 괜히 생각나잖아요. 뉴스에서 살인사건 이런 것들 보면 내 입장하고 똑같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도 나고... 또 그러면서 괜히 (망자) 생각도 나고... 그거 때문에 좀 회피하는 편이에요.”(참여자 바)

“거기 가면 아무래도 피아노 치는 자리에 (망자)가 보이려고... 그래서 저희가 나온 거예요. 사건 났던 자리를 한 번도 간적 없거든요. 가끔 거기 지나올 때 이제 생각을 안 하려고...”(참여자 사)

이러한 의식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망자에 대한 그리움은 망자와 동년배를 만나거나 망자를 생각나게 하는 기일이나 축일 등에 배가 된다.

“추석 되기 전에 우리 조카가 왔다 갔어, 둘이 동갑인데 어떻게 그놈을 보니까 얼마나 생각이 나는지 미쳐버리겠어. 보내 놓고 엄청 울었어. 너를 보니까 이렇게 생각난다고... 그놈들은 보는데 내 새끼는 못 보고... 혼자 그렇게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더라고요...”(참여자 가)

“이번 설은 또 어찌 지나나... 그런 날만 되면 그렇게 아파... 가족들 다 모였는데, 너만 없구나...”(참여자 가)

“그냥 잊고 지내다가도 가끔 지나가다 애들 보면서 우리 딸도 저렇게 다닐 건데... 그런 생각도 들고...”(참여자 마)

**지속될(미래) 아픔.** 세월도 참여자들의 아픔을 해결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의하면 시간이 지날수록 망자에 대한 그리움과 안타까움, 아픔은 더 커지지만 겉으로 표현하지 않은 채 감춰두게 된다고 한다.

“세월이 가면 잊어진다고 하는데 세월이 가면 잊어진다는게 아니라 더 새록새록 생각이 나요. 사는 것이... 잊어지기는커녕 새록새록 더... 생각이 드나봐요. 더 안타깝고 더 마음이 아프고... 시간이 가면 잊혀지는게 아니라 그러려니 감춰두고 사는 거죠. 집어 꺼내면 아프니까 한쪽에 놔두고...”(참여자 마)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망자가 그림고 보고 싶은 마음에 매일 새록새록 아프다고 호소한다. 자신이 경험하고 있는 고통이 어찌면 죽는 날까지 지속될 것이라고 이들은 말한다.

“눈을 감아야 잊어먹지 어떻게 잊어 먹겠어. 사는 날까지는 이렇게 가슴 아프게 사는 거지. 꿈에도 안보이네... 꿈에도... 그렇게 보고 싶은데... 세월이 가니 잊어지는게 아니라 더 보고 싶고... 그림고... 왜 한 번도 안보이냐고 하고 싶지... 그렇게 사진

만 쳐다보고 이야기 하지... 왜 한번도 안 오냐고... 꿈에도 안보이냐고...”(참여자 가)

### 부상주제 3 : 함께 살아가기

**망자와 함께 하는 일상.** 참여자들에게 망자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고 무거우며, 망자를 생각하면 밥을 먹기도 잠을 자기도 힘들 정도로 아프지만 이들은 점차 사건과 망자를 분리한 채 자신들에게 좋은 추억을 남기고 간 망자와 그 추억만을 생각하며 망자와 함께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터득하는 것으로 보인다. 망자와 좋은 추억에 대한 회상이야말로 참여자들이 망자를 잃은 슬픔과 아픔에 대처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다음은 이러한 현상을 잘 보여주는 참여자들의 진술이다.

“우리가 이렇게 식탁 같은 데에 앉아서 밥 먹을 때 보면 (망자)가 있는 것 같고... 그게 우리끼리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거 좀 편해지기는 했는데 반찬도 이것도 (망자)가 좋아했었지... 이런 거 라든지... 이것은 반찬을 싫어했고... 둘째도 언니(망자) 이거 좋아했다고 이런거 있으면서 생각은 나는 것 같아요. 그것도 자연스럽게...”(참여자 바)

“엄마가 얘기하듯이 지금쯤 우리 아빠가 이럴텐데... 아빠가 평소에 해왔던 것들, 그럴 때 잠깐 생각날 때, 아빠랑 여행 갔던 것, 추억의 장소를 보면 좀 그렇고...”(참여자 아)

### 범주 2 : 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사건으로 인한 망자

의 갑작스러운 사망 후 이전과는 달리 일상생활에 대한 흥미를 잃고 무기력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망자가 사망한 후에도 밥을 먹고, 잠을 자는 등 본인의 일상은 여전히 이어지는 것에 대한 미안함과 본인과는 무관한 사건으로 인한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업보로 인해 망자가 사망한 것만 같은 죄책감을 호소하였다. 또한 사건 당시 망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되뇌이며 괴로워한다. 특히, 이들은 사건 당일 자신과 망자가 달리 행동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가정사고로 자신을 더욱 힘들게 한다. 그러나 결국에는 망자를 잊기 위해 몰두할 수 있는 활동들을 찾기도 하고, 종교 활동을 시작하는 등 이전과는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상주제 1 : 고통

**일상에서 느끼는 고통.** 참여자들은 갑작스러운 사건으로 망자를 잃은 후 똑같이 일을 하고, 돈을 벌고,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눈다고 해도 예전과 같은 재미를 느끼지 못하고, 무기력해지는 등 삶에 대한 희망을 잃었다고 보고한다.

“갈수록 먹는 거에 대해서도 별로예요. 예전에는 부침개도 만들어서 먹었는데 그것도 하기 싫고 갈수록 하기 싫어지더라고요. 뭘 하기도 싫어요. 재미도 없고...”(참여자 라)

“그런데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때는 하루하루 사는 거였어요. 지금은 내가 잘 살아야지 하면서도 더

무기력해지는거 같아요. 이젠 계속 사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일은 하고 돈은 번다해도... 뭐라 해야 될까요? 사람한테는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지는 거죠... 오늘 뭐해야지 하면 그냥 가는 거고 특별하게 재미있어서 즐거워서 그런건 아니에요. 힘들어도 고생스러워도 사는데 애들을 보고 커가는 것 보고 내가 돈을 열심히 벌어서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있잖아요. 그런 생각들이 갈수록 없어지는 거죠.” (참여자 마)

그러면서도 참여자들은 망자는 사라지고 없는 지금도 여전히 일상생활을 이어나가는 것에 대해 미안함을 호소하였다.

“내 자식은 죽었는데 내가 이렇게 잠을 자고, 밥을 먹는다는게 너무 미안해. 내가 이렇게 살아 있는 것도 미안하고... 다 미안해. 너는 그렇게 갔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 있고, 내가 이렇게 먹는다는게...”(참여자 라)

더 나아가 참여자들은 자신이 사건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로 인하여 망자가 사망한 것만 같은 죄책감을 느낀다고 하였다.

“사람들이 저 집은 뭘죄를 지었가니 애들을 그렇게 보냈냐고 할까봐... 팔자가 얼마나 사납가니 애들을 그렇게 보내냐고 할까봐... 그래서 사람들도 못 만나겠고, 위로한다고 하는 말들이 위로가 안되고 도리어 가슴을 후벼파고...”(참여자 가)

“내 탓인 것만 같아. 그놈이 죽일 놈이다 이려고 살았는데, 처음에는 말이야. 지나고 보니까 내 잘못 같아. 내가 뭘 죄를 지었을까, 전생에 내가 뭘 죄를 지어서 이런 아픔을 겪게 하나. 그 놈은 죽이고 싶은 사람 죽였으니 속이 시원할거 아냐. 아픈 사람은 낭개... 내가 이런 아픔을 느낄만큼 죄가 많은가 보다 그런 생각이 들어.”(참여자 라)

#### 망자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동일시.

참여자들은 사건 당시 망자가 얼마나 공포에 시달리고 아팠을지 반복적으로 생각하며 자신이 마치 망자인 양 유사한 신체 부위에 대한 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하는 양상을 보였다. 참여자들 전반에 걸쳐 이러한 내용의 진술이 일관되게 드러나고 있다.

“새벽만 되면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잠에서 깨요. 숨을 못 쉴 정도로 아파요. 우리 남편이 칼 맞은 곳이 저도 똑같이 너무 아파서 숨을 못 쉬어요. 제가 칼을 맞은 것처럼... 얼마나 아팠을까(통곡)... 얼마나 아팠을까... 말도 못하고...”(참여자 나)

“문득 문득 우리 딸 그 칼만 생각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져. 나는 그것이 생각이 나... 그 칼로 찌실 때 내 새끼가 어땠을지.. 그걸 못 잊겠어. 안 죽으니까 13번을 찔렸다는거 아냐... 그거를 생각하니까 못 살겠어. 칼로 찌시는 그 아픔이 와... 자식이라... 내가 직접 당해보니까 그게 아니야...(통곡) 그 칼로 찔렸을 때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생각을 안해야 되겠는데 그게 날마다 생각이 나서 그거 때문에 못 살

겠어.”(참여자 라)

**살아온 삶에 대한 회한.** 참여자들이 느끼는 고통에는 자신의 삶에 대한 회한도 포함된다. 참여자들은 지금껏 노력하며 고생해 온 삶의 결과가 망자의 죽음이라는 생각에 대상이 불분명한 원망감과 억울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호소는 60세 이상의 참여자들에게 보다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다.

“나는 이날 이때껏 조상들 제사 꼬박꼬박 지내, 우리 남편이 첫째도 아닌디 산소도 다 관리해, 사람들한테 나쁜 소리 안 듣고... 음식도 하면 동네 사람들하고 다 나눠 먹고 그러고 살았어요. 근데 그래 봤자 다 소용 없더라고... 일이 이렇게 되고 보니 그런 것이 다 무슨 소용이 있나, 내가 왜 그렇게 바보처럼 살았나... 결국에는 이렇게 됐구나... 아니, 어머니, 아버지 거기서 뭐하셨소, 우리 장손 하나 못 지키고... 내가 장손 며느리도 아는디 시어머니 모셨어. 근디 다 소용 없더라고... 바보처럼 살았지... 고생만 하고... 근데 남은게 이거야, 생때 같은 우리 아들 잡아간거...”(참여자 가)

“평생을 바르게 살고, 선하게 살려고 애를 써왔거든... 이거 뭐야 순간, 내 삶에 대한 보상이, 이 나이 돼서...”(참여자 다)

**부상주제 2 : 후회**

**사건관련 대처에 대한 후회와 죄책감.** 참여자들은 사건 당일을 반추하며 망자나 자신이 조금이라도 다르게 행동했더라면, 다른 선택을 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사후가정사고를

한다. 사건 당일뿐만 아니라 사건과 큰 관련성이 없는 과거, 피해 당사자인 망자 및 사건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자신 또한 사후가정 사고의 타겟이 된다. 이러한 생각들은 사건을 이해하거나 사건의 의미를 탐색하는데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지만 이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생각에 몰두한다. 이를 통해 본인의 행동을 비난하고, 다르게 행동하지 않은 것을 가슴 깊이 후회한다.

“그날 저녁 큰애 치즈피자를 사다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빨리 들어오기로... 그런데 전화를 해보니 술을 마시고 그(가해자) 집에 간다는 거예요. 못 가게 하면 싸움이 날게 뻔하고... 기분 좋게 마시고 있는데, 잔소리 해서 기분 상하게 하기도 싫고... 그래서 그냥 알았다고 했는데... 그때 내가 말렸어야 했는데... 싸우더라도 그렇게 했어야 했는데... 내가 그러지를 않아서... 그래서 이렇게 된 것 같고... 자꾸 그런 생각만 들고...”(참여자 나)

“빨리 휴학시키고 자퇴시켰으면 이런 일이 안 일어났을까도 싶고... 우리 애(망자)한테 빨리 못 해준게 그렇게 된걸까 싶기도 하고...”(참여자 마)

**부상주제 3 : 대처**

**견뎌내기 위한 노력.** 참여자들은 자신의 고통을 극복하고 해결하기 위해 나름대로의 대처방법들을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건에 대해 의식적으로 생각하지 않기 위해 사건 관련 이야기를 하지 않기도 한다.

“서로가 짐사람하고는 대화는 계속 하

는데 그 부분(사건)에 대해서는 서로 생각 나게 하는거 같아서 조심하는거 같아요. 안 좋은 기억들이 다시 살아날까봐...”(참여자 바)

참여자들은 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수동적으로 견뎌내는데 주력하기 보다는 이를 잊기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몰두할 활동을 찾기도 한다.

“운동 같은 거로 많이 풀기도 하고, 집 사람하고 동네 한 바퀴 돈다든지... 우리 또 새로운 식구(강아지) 그렇게 논다든지...”(참여자 바)

“중간에 4월말인가 강아지 하나 가져왔어요. 이쁜 짓을 많이 해서... 말썹이란 말썹은 다 부리는데 저도 이렇게 좋아하게 될 줄 몰랐어요. 거기에서도 저희한테 쫓던 분도 만약에 못 키우면 다시 보내달라고 했거든요. 그런데 재 때문에 정신이 많이 없다고 해야 하나? 저희 둘째딸도 재랑 맨날 싸우는 재미에...(웃음).”(참여자 사)

**사건 이후 가치관의 변화.** 참여자들에게 살인사건으로 인한 망자의 죽음이 아픔만 남기는 것은 아니다. 참여자들은 사건 후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변화를 시도하기도 한다.

“내가 좀 더 노력할걸... 배려할걸... 또 괜히 가족들한테 예전에 화내고 짜증내고 이런 것들 있잖아요. 미안하고, 항상 미안하죠. 지금도 마찬가지로 미안하죠. 내가 더 잘해줘야 되고, (망자)한테도 그 때 잘해줬어야 되지 않나... 항상 자책하고 있고

그런 것들을...”(참여자 바)

이를 통해 기존의 삶에 대한 태도, 행동, 그리고 방식에 있어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나기도 한다.

“직장 내에서 음담패설하는 것도 싫어졌어요. 말하기도 싫고. 그런거에 대해서 언어적인거, 행동적인거, 남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거, 음담패설하고 여자애기 많이 하잖아요. 그런거 자체가 다 싫어졌어요. 그런 변화도 있었고... (망자)도 어떻게 보면 여자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그거 자체가 그런거 같고...”(참여자 바)

“제가 리더예요. 내 하나의 마음 관리도 힘든 상황인데 다른 사람 마음 관리를 한다는게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마침표 찍기로 했어요. 편안하구요. 이젠 새로운 공부하는데 영어도 어렵고 하는데 한 3주만에 잘 따라 가는거 같아요. 또 어렵다고 힘들다고 하면 남편도 이야기 들어주고 하니깐... 동생네랑 여행도 몇 번 다니고, 그 일 이후에 계속해서 여행 다니고 최근에야 집에 계속 있고요. 예전처럼 아등바등 하지 않아요.”(참여자 사)

이러한 변화에는 종교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참여자 (다)의 경우 사건 이후 기존부터 지니고 있던 종교에 대한 믿음이 더욱 강해졌으며, 이를 통해 다시 삶을 살아나갈 힘을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 (바)는 사건 후 종교 생활을 시작하였으며, 누구에게도 드러내보일 수 없는 아픔을 종교 활동을 통해 해소한다고 하였다.

“그래도 이런 억장 같은 세계에서 버틸 수 있게 해준 것이 신앙의 힘이야. 그 힘으로 버텼어. 일주일에 한번 정도 자기를 살펴봐. 천당 있고 없고를 떠나서...”(참여자 다)

“저한테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것은 믿지 않았던 교회에 나간 것이 가장 큰 변화인거 같아요. 교회에서 항상 용서하고 사랑하고 죄인처럼 느끼는 것이... (망자)가 그렇게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됐다 하더라도 좋는데 가 있길 바라고 좋는데 가 있는 걸로 저희 가족들이 항상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부분은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변화인 거 같아요. 교회가면 내가 하고 싶은 말 누구한테 하니까 그게 마음이 평온해지는거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누구한테 이렇게 친한 친구한테도 할 이야기 못하잖아요. 그런데 이젠 누구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 속으로지만 그렇게 하니까 마음이 평온을 찾은거 같아요. 만약에 그것도 안했다면 매일 술만 먹고 그랬을 거 같은데...”(참여자 바)

### 범주 3 : 가족

참여자들에게 남은 가족은 또 다른 아픔이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아픔보다는 남겨진 가족들의 아픔을 걱정한다. 특히, 가족들이 망자를 그리워하며 아파하는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는데다 자신의 아픔으로 인해 가족들이 괴로워할까봐 이를 표현하지 못한다. 따라서 이들은 사건 이전처럼 아무 일도 없었던 듯 살아간다. 그러나 남겨진 가족들에게도 망자와 유사한 사건이 벌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혀 반복적으로 이들의 안전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지만 중국에는 가족의 품 안에서 다시 살아갈 힘을 얻고, 가족들의 소중함을 느끼게 되는 양상을 보였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부상주제 1 : 아픔/배려

**남겨진 가족을 바라보며 아픈 마음.** 참여자들에게는 자신보다 남겨진 가족들이 겪을 아픔에 대한 걱정이 크다. 이들은 망자를 그리워하는 가족들을 보며 가슴 아파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아픔을 미루어 짐작하며 가슴 앓이 한다. 이로 인해 이들은 가족들이 아파할까봐 정작 자신의 고통이나 아픔은 드러내지 못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모든 참여자들의 진술 내용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우리 애기들(망자의 어린 자녀들)이 제일 걱정되지 누가 걱정되었어... 며느리도 쳐다보면 잔해 죽겠고... 어떻게 살아갈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잔해. 니가 힘들 것이다, 힘들 것이다, 소리를 해도 내가 뭐 도와주지도 못하고, 뭐 할말이 있겠어. 없지. 애들 보면 오지고 가슴 아프고...”(참여자 가)

“(사건에 대해 알게 된 당시) 아무 생각 없고, 내가 어떻게 집에 가서 우리 애기들을 볼 수 있을까, 우리 아저씨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 생각밖에 안했어요. 나를 생각할 시간은 없었어요. 그 당시에...”(참여자 마)

“엄마가 저희가 상처받을까봐... 초기에는 저희도 이런 저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

으니까... 풀고 싶은 상대가 있는데 이게 저희들 밖에 없으니까... 저희는 힘들어하는 것 보이면 엄마가 더 힘들어질까봐 말 안하죠, 서로 아니까...”(참여자 아)

망자를 그리워하며 고통스러워하는 가족 구성원들을 목도하는 경험은 참여자들에게 또 다른 아픔이 된다.

“환장하지, 밖에 서서 울고 있었어. (둘째 아들, 망자의 오빠가) 아주 아파하더라... 데꼬 왔는데 또 갔어. 나는 자기 집 간줄 알았지. 뭣하러 또 갔냐, 사고 나면 어찌려고... 몇일 굶고 살았거든. 몇일 아무도 밥 못 먹고... 그런데 또 가. 아프더라, 참으로 아파버려(눈물)... 애들(망자) 또 거기(망자의 묘지)에다가 혼자 두고 마음이 아파. 애비여도 거기 혼자 있으라 해도 못 있어. 춥고 비도 오고 캄캄하지 불도 없어, 시골이라. 그런데 (둘째 아들, 망자의 오빠가) 거기 서서 혼자 그렇게 있어. 쫓쫓쫓. 와서 또 가. 그래서 거기서 날 새. 거기를 혼자 또 갔냐 뭐라 했더니, 그럼 애를 거기에 혼자 두어야 하나고... (통곡)”(참여자 다)

**남겨진 가족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한 배려.** 참여자들은 남겨진 가족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망자나 사건에 대해 표현하지 않고 아무 일 없었던 듯 살아간다. 자신의 슬픔이나 고통으로 인해 다른 가족들이 상처를 받을까봐, 힘들어질까봐 망자와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은 채 사건 이전처럼, 평소처럼, 그렇게 살아간다.

“(가족들과 망자에 대한 이야기) 잘 안해, 잘 안해. 내가 먼저 못트지. 내가 못하는거지. 뻔히 안 사실이면서도 못해. 자녀들한테 아픈 마음을 안보이기 위해서 그러는거겠지. 내가 아픈 마음을 안 보일라고... 자기들 마음이 더 아플까봐. 안 그래도 멀리(타지에 사는 자녀들) 있으면서도 힘들어하는데 엄마가 그렇게 아픈 얘기를 하면 어떻게 버텨. (그래서) 안해. 자녀들이 가슴 아플까봐. 엄마 아는 것이 얼마나 가슴 아파. 자기들 표정을 보면 다 알건데... 그래서 말 못해. 서로 감정 나오면 울고 불고 복잡해지지. 말하면 가슴 찢히고, 아프지. 될 수 있으면 안하고 살지. 형제들 간에도 다... 그런 (망자)를 보내고 어떻게 사나 하니까 안부전화도 못한대요. 할말이 없어서 못한대요. 그냥 표현을 안해, 그냥 나쁜말 안하고 살지. 어떻게 표현하고 뭐하러 하겠어. 안 하고 평소대로 사는데 그게 좋은 거지.”(참여자 가)

“지금은 (자녀들이) 자주 전화하면 싫어, 아주 그냥 애들한테 너무 짐이 되나 싶어서... 그래서 자주 하지 마라고 해. (자식들)한테 나가서 보면 우리들만 이런 슬픔 있는거 같지? 다 슬프더라, 자식 보낸 사람이 나 하나 있는거 같지만 자식 잃은 사람이 우리들만 있는거 같지만 우리들은 워낙 억울하게 가서 그렇지 다 교통사고, 무슨 사고 이런거 있어서 다 슬픔 잊고 살더라.”(참여자 라)

## 부상주제 2 : 걱정

**남겨진 가족의 안전에 대한 걱정.** 참여자들에게 남은 가족의 안전은 매우 중요한 문제

이다. 이들은 남은 가족 구성원들에게도 유사한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는 걱정을 안고 살아간다. 참여자 (가), (마)의 보고에 이러한 내용들이 극명하게 드러난다.

“미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해서 항상 얘기해요. 조심해라, 사람 조심해라. 큰 놈 그렇게 가버리고 나니까 항상 걱정이예요. 또 그런 일 당하지 말라는 법 없으니...”(참여자 가)

“애들이 좀 늦게 들어오면, 연락 안 되면 항상 무섭죠. 혹시나 또... 겁이 나는 거예요. 판 애도 그럴까 싶어서. 전화가 안 되면 무서워요. 뭔 일이 있나 싶어서... 행여나 우리 딸이 무슨 일이 생겼나 싶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되면 정말 불안해요.”(참여자 마)

이러한 염려로 인해 이들은 이전과는 달리 가족들의 안전을 반복해서 확인하게 된다.

“둘째한테도 뭔 일이 생길 것만 같아서 자꾸 전화하게 되고... 사람 만날 때 조심하거라 이런 말 하게 되고 그러지요. 옛날에는 안 그랬는데 달라졌지요.”(참여자 가)

“딸 주변이라든지, 딸 학교 남자애들하고의 관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보면 관심 있게 더 봐 지는거 같고, 아마 (망자) 사건 때문에 그런 생각이 많아진거 같아요.”(참여자 바)

### 부상주제 3 : 응집력 증가

가족 내 응집력 증가. 참여자들은 사건 이

후 가족의 소중함을 재발견하게 되며,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 위해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할애하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가)와 (바), (사)에 의하면 망자가 사망한 후 남겨진 가족들끼리 여행도 다니고, 대화도 자주하는 등 전에 비해 함께 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참여자들은 가족의 소중함을 느끼게 된다.

“예전에 가족은 나하고 같이... 뭐 모르겠어요. 일에, 직장에 얽매여서 어떻게 보면 거의 집에서 잠만 자고, 밥만 먹고, 그렇게 가족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 썼고... 개개인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못쓰고 그랬는데, 한 일원이었는데... 그게 가족이었죠. 옛날에는... 그런데 지금은 관심을 내가 이렇게 주다보니까 너무 관여는 아니지만 개인적으로 뒤에 대해서 물어봐주고, 대화를 서로 하다보니까 훨씬 친밀해진건가? 가족에 대해서. 이게 더 가족이구나... 이런것들? 더 친밀감이 당연히 생긴거에 대한거, 서로 배려해주는거, 이해가 많아진거 같아요. 상대방에 대해서... 말도 더 해주고, 더 가족애가 서로 배로 해주는 것이 커진거 같아요. 훨씬 대화도 많아지고, 좋아진거 같고... 가족 서로가...” (참여자 바)

참여자들에게 살인 사건과 망자의 죽음은 아픔이지만 이들은 생전의 망자에 대한 좋은 추억과 기억들을 되새기고, 남겨진 가족 구성원들과 이를 서로 표현하고 공유하면서 아픔을 이겨나가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사)의 진술은 이를 매우 잘 드러내준다.

“지금 버티는 이유가 저희 딸 사건보다

는 저희 딸 생각을 해서 버티는 거 같아요. 그냥 우리 딸 이야기 하는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했고요. 저희 둘째 딸도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고 그리고 시시때때로 저희 딸 이야기를 해서... 저희 둘째가 좀 민감해서 물어봤더니 엄마가 딸이니까 그런 이야기 엄마가 가끔 한번씩 하면 놀래지 말고 받아주라고 이야기 했거든요. 그냥 보고 싶으면 보고 싶다고 하고... (망자)랑 갔던 곳, 좋아했던거, 아무렇지 않게 이야기 하는거..."(참여자 사)

참여자들에게 남겨진 가족들의 관심과 도움, 혹은 이들을 돌보는 일은 망자의 사망이라는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데 큰 힘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사건으로 인해 부모를 잃은 어린 자녀나 손주를 돌보는 것은 참여자들에게 아픔이지만 한편으로는 삶을 살아가는 원동력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많은 위로가 되죠. 자식들이... 자식들이 그래도 그 빈자리를 채워줄라고 애를 쓰는 거지, 한마디로... 다른 거 욕심낼 것도 아니고, 욕심낸다고 해서 될 것도 아니고... 우선 (망자의 어린 자녀들)어린게 갈 곳이 없으니까, 할머니집 왔다 갔다 하고 밥이나 해주고 그 생각뿐이지 내가 애들한테 뭘 큰 보탬이 되겠어. 밥해주고 얘기하고 웃어주고 그게 다지... 그게 제일 큰 보탬이지... 보람이지... 돈이 다 있고 그런걸 떠나서 우리애들 건강하게 잘 커주기만 바랄 뿐이지.”(참여자 가)

“애들이 없으면 이미 저도 저 세상 사람일거예요. 큰애가 (망자)를 많이 닮아서...

애들 돌보다 보면 하루가 가고, 정신 없이 그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시간이..."(참여자 나)

#### 범주 4 : 타인/세상

참여자들은 망자의 사건으로 인해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신을 갖게 된다. 이전과는 다르게 사람들은 무섭고 세상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는 곳이다. 타인들은 자신들의 아픔을 이해하기 보다는 단순한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해 아무렇지 않게 망자와 사건에 대해 묻는다. 또한 참여자들에게는 결코 잊을 수 없는 목숨 같았던 망자를 잊으라고 쉽게 말한다. 타인들의 이러한 태도는 참여자들에게 상처가 된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망자가 사망하고 없는 지금도 여전히 망자를 기억해주고 자신을 걱정해주는 사람들, 잊어버리고 지나갈 뻔했던 기념일을 살뜰히 챙겨주고 따뜻한 말로 자신에게 힘을 주고자 하는 사람들을 통해 위로를 받고 힘을 얻기도 한다.

#### 부상주제 1 : 불신/상처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신.** 예상하지 못했던 살인 사건으로 한순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참여자들에게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한 곳이 아니다. 사람들 또한 믿을 수 없으며, 언제든지 가해자와 같은 살인자로 변할 수 있는 무서운 존재이다. 이러한 내용은 참여자 (다)의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이건 분노를 넘어서 절망 할 수밖에 없어. 인간이 이래야 되겠냐, 인간에 대한 환멸, 회의, 자괴감... 이렇게 안 들겠어? 남학생, 여학생이 가면 너 남자 잘 봐야겠

어. 겉모습만 보지 말고... 언제 저서 버릴지 모르니까... 대학생들 손잡고 가는 커플들 보면 현재 그림은 좋지만 어느 날 남자가 저 여자 어떻게 할지도 모르는데 안심하지 마라, 안심하지 마라. 네가 지금 손을 잡고 간다면 저 놈이 나중에 칼을 휘두르고 할 놈인지 모르니까 주위를 잘 살펴야 되겠는데... 사람이 못 믿어져 이젠. 좋은 사람을 보면 좋게 보여야 하는데... 저 놈 속에는 뭐가 들었을까...”(참여자 다)

**타인으로 인한 상처.** 사람들의 사소한 말과 행동이 참여자들에게는 상처가 된다. 특히 사람들이 사건과 망자에 대해 물어 보는 말들이 단순히 자신들의 호기심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처럼 느껴질 때, 참여자들은 상처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내용은 참여자들의 진술에 잘 드러나 있다.

“사람들이 알면 그 사람들이 위로가 되는 게 아니라 자꾸 물어보고 그게 싫어요. 그래서 지금도 몰라요. 그래서 사망신고도 다른데 가서 하고 거의 한달 다 돼서 할 수가 없어요. 실은... 가서 지금도 등본 때라고 하면 동사무소 안가고 다른데 가요. 아는 사람들 있으니까 그거 보면 그게 싫은거예요. 그게 굉장히 싫어서... 사람들 말이 오르내리고 엄청 들잖아요. 그게 굉장히 싫어서... 자기들은 위로라 할지 모르지만, 왜 죽었을까 젊은 놈이 왜 죽었을까 이러쿵저러쿵 말하는거 정말 싫어요”(참여자 마)

“겉으로 표현 안하고 사는데 그거 건들면, 누가 (사건에 대한) 말을 하면 그제 스

트레스니까 말하기 싫은거예요. (다른 유가족이)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주위 사람들이 위로를 해주는데 그건 위로가 아니라고 그건... 그건 맞다고. 위로가 아니라고. 자기가 겪어보지 않으면... 겪어본 사람들은 건들면 아프니까 말을 안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그게 위로라고 하는게 아니라 상처를 더 건들고 어쩔때는 자기를 재미삼아 말하는거 같이 그러는거 같아”(참여자 마)

참여자들은 자신에게는 죽기 전에 결코 잊을 수 없을 것만 같은 망자를 잊으라고 쉽게 말하는 사람들의 태도에도 화가 나고, 상처를 받는 것으로 보인다. 이는 참여자 (가)의 진술에 잘 나타나 있다.

“주위에서 잊으라고, 잊으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남 말이라 잊으라 하지, 세상에 자식을 잊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런데 화가 나.”(참여자 가)

## 부상주제 2 : 위로 받음

**타인으로 인해 힘을 얻음.** 참여자들은 피해자의 사건을 자신만큼 슬퍼하고 속상해 해주는 사람들, 피해자가 사망하고 없는 지금도 여전히 피해자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에게 대해 고마움을 느끼고, 이들로 인해 다시금 자신의 삶을 살아갈 힘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참여자 (사)의 경우 망자의 친구들이 인터넷에 망자의 생전 모습을 동영상이나 사진으로 올려 추모하는 모습을 보며 큰 위로를 얻었다고 보고하였다.

“동네 사람들이 이런 딸을 뒀다고 다들 부러워했지. 죽어서도 너나 할 것 없이 속

상해하고, 슬퍼하고 그러지. 그런 게 고맙기도 하고, 서럽기도 하고...”(참여자 라)

“그날부터 해서 정말 위안이 됐던게 (망자)친구들. 그 애들이 (망자)밴드 만들어 준거부터 해서 (망자)가 피아노 쳤던 것들, 그 친구들의 (망자)에 대한 그런 생각들... 그런 것들을 애들이 너무 많이 표현해줘서 그거 때문에 위안이 많이 됐어요. 원망을 했을텐데... 감사함은 아니지만, 감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좋은 데에 같이 있을거라는 그런 믿음을 그 애들이 다 줬던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컸던 거 같아요.”(참여자 사)

참여자들에게는 자신의 아픔을 이해해주고 말없이 지켜보며 보살펴 주는 주변 사람들이 큰 위로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에 대한 고마움으로 살아갈 힘을 다시 얻는다.

“우리 아들이 살았을 때도 그렇게 나한테 잘하더니 죽어서도 이렇게 좋은 인연을 만들어주고 가서 고맙지. 늘 내 걱정 해주더니 죽어서도 이렇게 선생님들 같은 사람들을 엮어 주고 갔으니... 이렇게 나를 챙겨주고, 보듬어 주고... 너무 고맙지...(눈물)”(참여자 가)

“저는 이번에 제 생일인지도 모르고 멍청하게 김장하고 그랬는데 4시나 되니까 전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애들 아빠 후배가 형수하고 밥 한끼 먹고 오라고 해서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오라고 해서 하도 성의가 고마워서 나가서 밥을 먹고 아침에 생일이라고 소고기 사서 주더라고

요. 미역국 끓여먹으라고... 아들하고 저하고 밥을 얻어먹었어요. 형님, 너무 마음이 아프다고 하면서... 내가 입원하니까 ‘(동네 어르신이)자네 좀 병원에 가서 푹 쉬다 와야 돼.’ ‘왜요?’ ‘자네가 지금 보통 마음으로 일 했는지 알아? 그런 거 다했다고 하면 상상도 못해.’ (동네 어르신이) 다리가 안 좋은데도 나와서 둘러보고 가시고 애기 아빠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다고 그러면서... 그 공을 이번에 잘 받았어요. 돈을 떠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렇게 도움을 주신 분들이 계시고... 나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으신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산 거예요.”(참여자 자)

#### 범주 5 : 가해자/가해자의 가족

참여자들에게 가해자와 가해자의 가족은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존재이다. 망자를 살해한 가해자뿐만 아니라 사건 후에도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의 가족 또한 이들에게는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다. 참여자들은 가해자가 자신이 저지른 죄값을 정당하게 치르기를 소망하지만 기대치보다 턱 없이 낮은 형량은 그들의 마지막 소망마저 단번에 무너뜨린다. 이런 현실에 당면하며 이들은 결국에는 ‘내가 직접 가해자를 죽여야겠구나’라는 생각으로 가해자에 대한 복수를 꿈꾼다.

가해자를 살인자로 키웠다는 생각에 참여자들은 가해자의 가족들에 대해서도 분노한다. 자신의 가족 구성원이 저지른 죄에 대해 나몰라 하며, 사과조차 하지 않는 가해자의 가족들을 보며 이들의 분노와 원망감, 억울함은 배가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자들은 출소 후 가해자가 혹시라도 자신들의 남은 가족

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을 염려한다. 이 때문에 망자의 억울함을 재판 과정에서 피력하며 항소를 하는 것에 대해 부담감과 불편함을 호소하기도 한다.

### 부상주제 1 : 부정적인 감정

**가해자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참여자들에게 망자를 살해한 가해자는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다. 참여자들은 살인 사건의 피해자인 망자는 이미 사망하고 있는데, 정작 피해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가해자는 여전히 밥을 먹고, 잠을 자고, 살아 있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하다. 이에 더해, 법정에서 여러 가지 이유를 들며 감형을 시켜달라고 주장하는 가해자의 모습을 보고 극심한 분노감에 사로잡힌다.

“반성의 기미가 없어, 죄의식이 없어. 송장을 차에 싣고 3일 동안... 무서워서라도 못해, 사람 같으면. 그런데 눈물 흘리면서... 가증스럽기가...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죄지는 만큼 달게 받겠습니다, 하면 죄의식이라도 있는가보다... 반성의 기미가 있으니까 깊이 반성하고 있으니까 감형시켜달라고 했더니? 그래도 저 놈은 살아 있으니까, 밥 먹고 잠자고... 그것이 억울해, 인간의 삶의 존엄성이 있는데 그것을 말아먹고 그것을 열한번을 칼로... 원한이 있어도 그렇게 죽일 수는 없어.”(참여자 다)

참여자들은 가해자가 저지른 죄에 맞는 합당한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 참여자 (다)의 경우 검사가 가해자에게 무기징역형을 구형하자 국가가 망자의 한을 알아주고 가해자를 처벌하고자 하는 의지를 보인다고 생각해 다소 위

안이 되었으나 선고공판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바가 무너지자 걸잡을수 없는 분노감과 허탈감을 경험했다고 보고하였다. 참여자들은 사형까지는 아닐지라도 인과응보라는 사회적 통념이 가해자에게도 적용되기를 바라지만 가해자에게는 이것 또한 비켜간다는 생각에 억울함과 좌절감을 느낀다.

“17년이라는게 말이 돼요? 사람을 죽이고 나서 17년이라니... 그것도 안 살라고, 억울하다고 대법원까지 갔어요. 그 인간은 17년 살고 나오면 60살도 안돼요. 다 필요 없으니까 내 (망자) 살려내라고 해요. 살려내라고.(통곡)” (참여자 나)

“가령 내가 백억을 드릴테니 합의합시다. 제안이 들어왔다 하자, 받아들이겠어? 못 받아들이. 백억이 아니라 다른걸 준다 한들, 대통령을 시켜준다 한들 못 받아들이. 그것이 부모의 마음이야. 내가 묻고 싶어. 판사나 검사 자기도 자식이 있을건데, 내 딸이 열한번 식칼로 난도질당해서 죽어 갔어. 그럼 거기서 당신들은 어떻게 판결 할래요? 감정 이입을 한번 해보시오. 최대한 높여서 판결해야 하는거 아니냐고.”(참여자 다)

믿었던 법체계에서 원하던 정도의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참여자들은 중국에는 자신이 직접 나서서 복수를 하겠다고 생각하게 된다. 참여자 (다)와 참여자 (라)의 진술에 이와 같은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괜찮은 사업인 것 같아. 사람 죽이고 몇십년 안에서 살면 되고, 그 때 나올 때

쫓 되면 내가 90 초반이나 될 것인데, 이거 내가 죽이고 말아야지.”(참여자 다)

“어쩔 때는 뭘 생각을 하나면 저 놈 나올 때까지 살아 있다가 저 놈 나오면 손발 다 잘라서 내가 저 놈 기어 다니게 만들어야지. 내 새끼 아픈거 알아보라고. 너 내 새끼만큼 꼭 아프게 해줘야 할텐데 이런 생각을 해.”(참여자 라)

**가해자의 가족에 대한 부정적인 감정.** 참여자들에게 가해자의 가족은 가해자만큼이나 분노와 원망의 대상이다. 참여자들은 가해자를 살인자로 키운 가해자의 가족들을 이해할 수도, 용서할 수도 없다.

“살인자의 DNA를 타고 난거지. 그 집안이 살인자로 키운거지. 어떻게 자식을 그렇게 키우나...”(참여자 다)

“저는 그 상대방의 부모도 아직도 계속 그렇게 자식교육을 했어야 했다. 상대방 부모에 대한 원망... 생각은 하고 싶지 않아요. 이제 그 상대방에 대해서는... 그런데 가끔씩 생각나면 내 스스로가 그때만 생각하고 좀 감정... 다시 또 평정을 찾으려고 노력 많이 하죠. 그런거 생각나면... 속에서 울분이 나고...”(참여자 바)

참여자들은 사건 발생 후에도 여전히 사과조차 하지 않으며, 무책임한 태도를 보이는 가해자의 가족들을 보며 어이없음을 넘어서 울분을 느낀다. 가해자가 동네 사람으로 사건 후에도 여전히 동네를 활보하는 가해자의 가족들을 보면서 별다른 법적 제재 방법이 없

어 답답함과 무력감을 느끼는 참여자 (자)의 진술에 이러한 내용이 잘 나타나 있다.

“저런 악마 같은 인간들하고 숨을 쉬고 살 수가 없어요. 아무 것도 필요 없어요. 돈도 땅도 필요 없고... 저 인간들(가해자 가족들)이 안 보였으면... 소름이 끼쳐버려요. 보고 살 수가 없어요, 저는. 못보겠어요. 참말로. 그 집 식구들은 못 보겠어요. 사람이라면 새끼들한테 미안하다,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다고 한번이라도 와서 말했으면 이해라도 하겠어요. 그런데 저한테 와서 한 번도 그런 적 없이 고개 들고 다니는데 진짜 못보겠어요. 어떻게 저런 인간들이 있을까 사람이라면 그건 아니잖아요.”(참여자 자)

## 부상주제 2 : 두려움

**가해자의 보복에 대한 두려움.** 참여자들은 가해자를 원망하고 미워하면서도 동시에 가해자가 출소 후 자신의 남겨진 가족들에게 해코지를 할 것에 대해 두려워한다. 참여자 (라)의 경우 가해자의 보복이 두려워 가해자에게 내리진 형벌이 낮다는 생각이 들어도 남겨진 자녀들에게 항소를 하지 말도록 당부했다고 보고하였다.

“저 놈이 나와서 우리 애들한테 해코지 하면 어쩔 것이여. 그러고도 남지. 우리 (망자)를 열한번이나 찢러 죽인 놈인데... 그래서 18년 받은건 억울하지만, 1년 더 살게 할라고 항소하고 자시고 하지 말자고 했어. 우리 큰놈하고 작은 놈 난리여. 그래도 괜히 항소한거 그놈이 알아봤자 칼만 더 갈 거 아니여. 그러고도 남지.”(참여자 라)

“먼 훗날이라도 또 우리에게 해코지를 할까봐... 저는 아니고 우리 딸한테라도 그럴까봐 두려운 것은 있어요.”(참여자 바)

#### 범주 6 : 현실적인 문제들

망자가 사망한 후 참여자들이 당면하는 현실은 녹록치 않다. 이들은 망자의 억울함을 알아주고 가해자를 엄벌에 처해줄 것이라고 기대했던 사법 체계가 살인자인 가해자를 먹여주고, 재워주며 가해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등 가해자를 두둔하는 것처럼 느낀다. 그러면서도 법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현실에 답답하고 억울하기만 하다.

이와 함께 참여자들은 망자가 사망한 후 갑작스럽게 생계를 도맡게 되고, 육아 등의 현실적인 일들을 떠안게 되어 막막함을 느낀다. 더욱이 망자가 사망한 후 남은 재산과 빚 등 현실적인 문제들을 처리하고 정리하면서 다시금 망자의 빈자리를 느끼고 현실적인 한계에 부딪힌다. 이러한 어려움 속에 놓여 있는 참여자들은 정부가 자신들의 아픔을 치유할 수 있는 심리지원 및 경제적 지원에 앞장서 주기를 바란다. 이에 대한 상세한 결과는 아래 내용과 같다.

#### 부상주제 1 : 법/제도에 대한 불만

**가해자 중심인 법/제도에 대한 불만.** 참여자들은 망자를 살해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법체계는 가해자가 숨을 쉬고 살아가게 해주는 것을 넘어서서 가해자를 돌봐준다는 생각에 분노와 억울함을 느낀다. 참여자 (다)의 진술에 이러한 내용이 잘 드러나 있다.

“법이 가해자편을 드는 것인지, 피해자

편을 드는 것인지, 사형제도도 없고... 법의 한계가 사형제도가 없어. 그럼 무기징역이라도 30년이나 40년이나... 자기는 살아 있는 것만으로도 복이여.. 자기는... 저지른 죄에 비하면 살아 있는 것이... 예리한 식칼로 열한번을 찔려서 죽어간 사람은 땅속에 있고... 그런 가해자는 자기 생명을 그렇게 남의 인권을 무참하게 앗아간 사람은 살고 있고... 숨 쉬고, 법이 먹여주고, 재워주고. 법이 피해자 편에 서야지, 가해자를 돌봐줘야 되겠냐. 이것이 법이란 것이... 죄를 지은만큼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닌 것이 문제야. 죄 지은만큼 벌을 받게 해달라 그 말이야. 편하게 살게 해주고 안심하게 살고... 그것도 못 들어주는 것이 법이냐 이 말이야.”(참여자 다)

가해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형을 받는다. 죄 없는 망자를 살해한 가해자가 사형은 커녕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감형을 받는 과정을 지켜보며 참여자들의 분노감과 억울함은 배가 된다.

“인권을 보호를 해야 되니까. 가해자도 인권이 있으니까... 자수를 할라 했다고... 그걸 법에서 인정해. 반성하고 참회하니까 감형을 시켜줘야 한다?”(참여자 다)

“죄 값을 크게 받았으면 했는데... 재판부의 결정이라든지, 초범이라든지, 젊은 애라든지, 재판부에서 정상참작해서 재판부에서 그렇게 나왔다고... 처남을 통해서 검사분한테 항소를 하니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을 엄하게 받게끔. 젊은 애니까 더 엄하게 받아야 한다고. 그렇게 했어도 어쨌든

고등법원까지 갔다고 해서 결론이 나버렸기 때문에...”(참여자 바)

참여자들은 최소한 법체계 내에서는 이미 세상을 떠나고 난 망자의 한을 알아주기를 원하지만 재판 과정을 통해 자신들의 기대처럼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목도하면서 깊은 좌절감과 억울함을 경험한다.

“피해자가 아픔을 치료하기 전에 피해를 호소해야 하는 이런 세상이어야 되겠나 이 말이야. 법에 약한 사람이 기댈 수 있도록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니냐 이 말이야. 최후의 보루가 되어 한다 이 말이야. 그럼 어디에다가 호소를 해야 한다는 말이냐, 열한번 식칼에 찔려간 사람... 그 억울함을 법에 호소를 할 수 밖에 없는데... 법이 이래서야 되겠느냐.”(참여자 다)

**법의 한계를 실감함.** 참여자들은 법적으로 가해자에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답답하고 억울하다고 호소한다. 손해 배상을 위해 민사소송을 하고자 해도 소송에 들어가는 경비가 필요하며, 형사사건 진행시에도 법적으로 본인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답답하기만 하다.

“피해자는 가해자한테 아무 것도 할 수 없고... 그게 억울하죠. (민사)소송도 돈이 없으면 못 걸잖아요. 실제적으로... 인권침해, 인권침해 하는데 그게 제일 서러웠어요.”(참여자 아)

“저 늙은 살아서 밥 잘 쳐먹고 살거 아니야. 온 식구가 법만 바라보고 짹 소리 하나 못하고 억울해서 못 살겠어. 법 때문

에 죽이지도 못하고...”(참여자 라)

**부상주제 2 : 현실적인 어려움**

**당면한 현실적인 어려움.** 참여자들에게 망자가 사망한 이후의 현실은 결코 쉽지 않다. 특히, 하루아침에 가정의 경제를 책임져야 하는 가장이 되거나 육아를 홀로 떠맡아야 할 때 이들이 느끼는 심리적 고통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참여자 (나)와 (라)의 진술에 이러한 고충이 잘 담겨져 있다.

“이제는 제가 돈을 벌어야 하고, 애들을 먹여 살려야 하고... 그게 너무 힘들고 버거운거죠. 남편이 있을 때는 많이는 아니어도 그 돈으로 먹고 살 수 있었는데, 저는 제 일을 하기는 해도 언제든 그만 둘 수도 있고...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애들이 저만 보고 있어요. 여름에는 작은애 유모차 태우고, 큰 애 데리고 산책도 하고... 애들 다 키우고 여행도 다니고 그러자 했는데... 다 물거품이죠. 제가 둘 다 데리고 하기도 힘들고... 남자애들이라 자전거도 타고 싶어 하고 나가서 뛰어 놀고 그래야 되는데 데리고 다닐 수가 있어야지... 마트 갈 때도 힘들고...”(참여자 나)

“우리애가 다 해줬지, 시장갈 때도 전화 하면 바로 오고, 어디 간다고 하면 차 태워다가 주고... 진짜 친구지, 내 손발이야. 근데 손발이 다 잘려버렸어. 하루 아침에. 이쁜 거 있으면 사다 주고, 좋은 거 있으면 먹여주고 그랬는데... 나 혼자 다 해야 돼. 애들은 어쩔 거야. 어쩐다냐, 다 내가 혼자 해야 돼.”(참여자 라)

망자가 사망한 후 참여자들은 남겨진 빛이나 재산 정리 등 즉시 처리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들에 당면한다. 이를 통해 현실의 냉정함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된다.

“은행가서 빚 정리 다 하고 나니까 남은 게 없고... 이제 어떻게 사나. 간 것도 서러운데 어떻게 사나, 너무 무겁고... 이제 진짜 내가 가장이 된 거예요. 그게 확 느껴지니까...”(참여자 나)

“아빠가 농협 VIP였는데 0.2%대 이자율이... 그랬는데 아빠 바로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연락 왔는데 4%대로 올라간다고 하시고, 인정 사정 없이 오더라고요. 그런데 너무... 정신 없는 상황에서 일처리 할려고 하니깐 참 난감하더라고요. 유예기간이 좀 어느 정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들고... 아빠 돌아가자마자 바로 4%로 이자율도 바뀌고...”(참여자 아)

### 부상주제 3 : 지속적인 지원의 필요성

**경제적, 심리적 지원의 필요성을 느낌.** 참여자들은 자신들에게는 국가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물질 지원뿐만 아니라 상담과 같은 심리적 지원을 통해 자신들의 말을 들어주고 치유해 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원한다.

“국가가 많이 도와줬으면 해요. 금전적인 것이 되든지 그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있으면 좋겠다고요. 그 사람을 지속적으로 계속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하다 못해 말동무가 될 수도 있고, 그

런 사람들을 지속적으로 만나게 해 주는 게 좋은 방법 중의 하나죠. 이렇게 선생님 같이 계속해서 가족들을 만나서 어떤 치유 프로그램이 계속 있어서 치유 해주는 어떤... 그런 것들이 지속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어떻게 보면 들어줄 사람이 없어서 가슴 앓이 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좋은 거죠. 진짜로 털어 놓을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죠. 주변에 업무적인 사람은 많고 해도 제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죠.”(참여자 바)

## 논 의

본 연구는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심리적 경험의 본질을 탐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이를 위해 살인사건 피해로 가족을 잃은 9명을 대상으로 개별 심층면담을 실시하여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수집된 자료를 Colaizzi 분석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의미있는 진술이 472개 추출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48개의 의미구성을 도출하였다. 이를 다시 주제 모음 24개, 부상 주제 16개, 범주 6개로 조직화하였다. 각각의 범주는 (1) 망자, (2) 나, (3) 가족, (4) 타인/세상, (5) 가해자/가해자의 가족, (6) 현실적인 문제들로 구성되었다.

각 범주별로 연구결과와 그에 따른 논의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망자’와 관련하여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은 죽음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으며, 현재도, 다가올 미래에도 여전히 아플 것이라고 말한다. 즉, 이들은 살아생전에 망자에게 좀 더 잘해주지 못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느끼며, 망자의 피해 사건을 상기시키는 뉴스 등의 자극물을 의도적

으로 피한다. 그러면서도 망자의 동년배, 기일, 축일 등 망자를 생각나게 하는 날에는 몸을 추스르기 힘들 정도로 힘들어 한다. 이러한 고통은 ‘시간이 약이다’라는 일반적인 통념과는 달리 세월이 흘러도 나아지지 않으며, 심지어는 새록새록 더 아프기도 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망자에 대한 좋은 기억과 추억을 되새기며 일상에서 순간순간 망자와 함께 하는 심리적 경험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들이 경험하는 망자에 대한 죄책감은 사랑하는 가족과 사별을 경험한 유가족들의 애도 반응(박정연, 2015; 오연주, 2008)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 대한 외국의 선행 연구들과도 크게 다르지 않다 (Amick-McMullan et al., 1989; Heidi et al., 2009). 다만, 살인사건 발생 후 3-5년 정도가 지나면 유가족들이 일반적으로 회복의 단계에 접어들어 사건의 후유증으로부터 벗어나기 시작한다는 기존 연구결과(Redmond, 1989)와는 달리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세월이 흘러도 자신들의 고통이 별다르게 감소되지 않으며, 심지어는 더 고통스럽기도 하다고 진술하였다. 이는 사건 발생 후 3년이 경과한 참여자들에게서도 동일하게 보고되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 참여한 유가족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4년 이내로 대상이 제한되어 있다는 점을 감안해 볼 때 연구결과를 모든 유가족에게 일반화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살인사건으로 인한 심리적 충격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제로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어야 하는지 확인하고, 시간경과에 따른 심리적 고통의 변화 추이 및 이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대한 연구가 추가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겠다.

한편, 유가족들은 이러한 심리적인 고통에

도 불구하고 망자에 대한 추억과 기억을 되새기며 일상에서 순간순간 망자와 함께 하는 긍정적인 경험을 하였다. 이는 사건이 발생한 시점으로부터 몇 년이 경과했느냐에 상관없이 대부분의 유가족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유가족은 망자가 떠오를 때면 죄책감과 미안함, 분노 등의 감정으로 고통스럽다는 연구결과들(Heidi et al., 2009; Hertz et al., 2005)과는 차이를 보인다. 다만 한 가지 고려해 볼 점은 본 연구의 대상이 강력범죄피해자 심리지원 전문기관을 2명 이상의 가족 단위로 함께 방문하여 지원을 받고 있는 유가족이었다는 것이다. 이들의 경우 혼자 관련 기관을 방문하는 사람들과는 달리 기존의 가족 관계 및 망자와의 관계가 긍정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들다. 따라서 추후에는 기존의 가족 간 응집력이나 친밀감과 같은 요인들이 유가족들이 망자의 사망을 수용하는데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둘째, ‘나’와 관련하여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은 자신에 대한 고통스러운 후회를 반복한다. 즉, 이들은 사망 당시 망자의 아픔과 공포 등을 떠올리며 마치 자신의 경험인양 괴로워할 뿐만 아니라 사건 당일 망자와 자신의 행동에 대해 반복해서 자책하고 후회한다. 사건 당시 대처 행동에 대한 반복적인 후회와 자책 및 살해당한 망자의 고통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과 같은 경험은 기존 연구들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나(Burgess, 1975; Amick-McMullan et al., 1989), 사건 당시 망자의 아픔과 공포를 상상하며 마치 자신이 사건피해를 당하고 있는 양 생생한 고통과 공포를 경험하는 것은 흥미로운 부분이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은 지금까지 노력하며

살아온 삶의 결과가 망자의 죽음이라는 생각에 삶에 대한 회한에 사로잡히기도 한다. 살인사건 피해가 자신과는 무관하게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망자의 죽음을 지금까지 살아온 자신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결시켜 해석하는 양상은 주목할 만하다.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국외의 선행 연구들(Amour, 2002; Englebrecht, Mason, & Adams, 2015; McDevitt-Murphy, Neimeyer, Burke, & Williams, 2012; Neimeyer & Burke, 2011; Sharpe & Boyas, 2011) 뿐만 아니라 자살과 같은 사건으로 가족을 잃은 우리나라의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김벼리, 2012; 박지영, 2010)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찾아 볼 수 없었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은 우리나라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독특한 경험으로 짐작해 볼 수 있겠다. 다만, 한 가지 주목할 것은 해당 진술이 본 연구의 참여자 중 60, 70대의 노인들에게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다. 노년기는 지나온 인생을 정리하는 시기로 자신의 삶을 회고하며 그 의미를 재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다양한 외상적 사건으로 가족 구성원과 사별을 경험한 노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서도(김정경, 2013; 김혜숙, 2015; 장수지, 2013) 드러나고 있는데, 이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망자와 함께 살아온 자신의 삶을 전체적으로 돌아보며 망자라는 존재가 자신의 삶에서 갖는 의미 및 망자와 관련된 과거 삶을 재해석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와 같이 망자의 죽음을 자신이 살아온 삶 전체를 부정하는 결과물로 받아들이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양상이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 중 60대 이상의 노인에게서만 드러나는 것인지 재차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또한 연령에 따라 유가족을 표집하여 망자의 죽음

을 자신의 삶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방식에 차이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한편, 유가족들이 ‘나’와 관련하여 비단 고통스러운 후회에만 몰두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들은 사건 관련 이야기나 대상들을 피하고 다른 활동들에 몰두함으로써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견디어 내거나 잊기 위해 노력함과 동시에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삶의 방식과 행동, 태도의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이러한 긍정적인 경험들이 사건 발생 이후 경과된 시간과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이러한 변화를 진술한 유가족 5명은 사건 전부터 종교 생활을 하고 있었으며, 남은 가족 구성원들과 망자에 대한 이야기를 비교적 자유롭게 표현하고 공유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이러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구체적으로 밝혀내고,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이에 초점을 맞춘 개입을 하는 것이 중요하리라 판단된다.

셋째, ‘가족’과 관련하여 유가족들은 남겨진 가족구성원을 보며 이들의 안전을 반복해서 확인하며 걱정한다. 또한 다른 가족구성원이 망자를 그리워하는 모습에 가슴이 아프지만, 이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해 사건에 대해 표현하지 않고 겉으로는 마치 사건 이전의 모습처럼 살아간다. 그러나 이전에 비해 가족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이들과 함께 하기 위한 노력이 증가하기도 한다. 또한 남은 가족들과 친인척들의 관심과 도움으로 사건으로 인한 고통을 극복할 힘과 위로를 얻는다. 많은 유가족들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언급은 피하지만 가족들과 망자에 대한 추억, 기억, 긍정

적인 감정들을 표현하고 공유함으로써 가족관계의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사건에 대한 언급뿐만 아니라 사건으로 인해 자신들이 경험하는 아픔들을 곁으로 드러내는 것을 꺼리는 양상은 말기암으로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Lim 등(2008)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러나 본 참여자들은 여기에 머물지 않고 남은 가족 구성원들의 상실에 따른 심리적 고통을 이해하고, 공감하며 이들을 돌보는 데 많은 에너지를 쏟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유가족들이 사건 자체에 대한 언급은 피하지만 망자에 대한 추억은 공유한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서로 위안을 얻을 뿐만 아니라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된다. 이는 동양의 집단주의 문화권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며 조력자를 찾아 나서거나 실질적인 도움을 요청하는 서양과는 달리 자신의 문제는 노출하지 않은 채 친밀한 사람들 속에서 이들과의 정서적 유대를 확인하고 자신이 그들 속에 소속되어 있음을 상기시키는 등의 방법으로 필요한 지원을 얻는다는 Taylor 등(2007)의 연구결과와도 관련 있어 보인다 (Taylor, Welch, Kim, & Sherman, 2007).

네 번째 범주인 ‘타인/세상’과 관련해 유가족의 머릿속에는 사건으로 인해 사람들은 믿을 수 없으며 세상은 더 이상 안전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신념이 자리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은 사건과 망자에 대해 가볍게 말하는 사람들을 보며 이러한 신념이 더욱 확고해지는 경험을 한다. 그러나 동시에 기일에 피해자를 잊지 않고 기억해주는 사람들과 자신을 돌봐주는 사람들을 보며 세상 속에서 사람들과 섞여 삶을 다시 살아갈 힘을 얻는다. 갑작스러운 살인 사건 발생으로 사랑하는 사

람을 떠나보낸 후 유가족들이 세상과 타인에 대한 신뢰와 긍정적인 신념이 사라지는 경험을 하는 것은 이전 연구결과에서 밝혀졌으며,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것이다(Amour, 2002).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상처 받은 그 곳에서 위로를 받으며 세상과 타인에 대한 불신으로부터 벗어나 또 다시 삶을 살아갈 원동력을 얻는 것으로 보인다.

다섯째, ‘가해자/가해자의 가족’과 관련하여 살펴보면 우선, 유가족들은 가해자에 대해 분노와 원망, 미움이 뒤범벅된 감정을 경험하며 이들이 제대로 된 죄값을 치루기를 바란다. 그러면서도 동시에 가해자가 출소 후 보복이나 해코지를 할 것에 대한 두려움에 시달린다. 가해자의 가족에 대해서도 자식을 살인자로 키워 놓고도 제대로 된 사죄나 반성이 없는 등의 무책임한 모습에 분노한다. 이러한 복수심과 분노는 기존 연구 결과(Horowitz et al., 1997)와 일치한다. 다만, 유가족들의 분노는 비단 망자를 살해한 가해자를 넘어서 그를 살인자로 키워낸 가해자의 가족에게도 미친다. 이들은 자식이 살인자가 되어 누군가를 살해하고 고통에 빠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삶을 살아가는 그의 부모에게 분노한다. 가해자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가족에게도 묻는 이러한 양상은 외국의 선행연구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한국인의 독특한 특성과 관련 있어 보인다.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영국계 미국인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Amour, 2002)뿐만 아니라 아프리카계 미국인 유가족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McDevitt-Murphy et al., 2012; Sharpe & Boyas, 2011), 그리고 아시아계 미국인을 포함한 다양한 인종들을 대상으로 한 최근 연구(Englebrecht et al., 2015)에서도 이러한 결과는 찾아볼 수 없었다.

한국인의 문화는 가족주의적 특성이 매우 강하여 가족을 개인을 책임지는 기본 단위로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명호, 2013). 일례로 한국에서는 부모 형제의 죄를 자동으로 혈연관계에 있는 자의 공동 책임으로 귀속시키는 연좌제가 1980년대까지 법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었다. 이러한 특성을 감안해 볼 때, 유가족들이 가해자에 대한 분노를 가해자의 가족에게 확대 적용하는 것은 일견 당연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유가족들은 망자가 자신의 삶에서 일방적으로 사라진 후 다양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경험한다. 이들은 자신들과 망자의 고통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은 채 여러 가지 이유로 감형을 시켜주는 사법 체계로 인해 다시 한번 고통 받고, 분노한다. 망자는 차가운 주검이 됐는데, 가해자는 여전히 살아 숨 쉬는 현실, 그런 가해자를 먹여주고, 입혀주는 등 돌봐주는 듯이 보이는 사법 체계에 한탄한다. 그럼에도 유가족들은 피해자로서 법적으로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철저히 소외된 현실이 답답하고 억울하다. 법과 제도에 대한 유가족들의 불만과 이로 인한 분노, 좌절감 등은 유가족의 외상 반응을 악화시키고, 장기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saro, 2001; Doka, 1996; Redmond, 1996). 수사 및 재판 과정의 종사자들에게 유가족들의 살인사건 피해는 산적해 있는 처리해야 할 많은 사건들 중 하나의 사건에 불과하지만 유가족들에게는 누구와도 바꿀 수 없는 세상에 단 하나뿐인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이므로 이러한 과정에서 이들의 마음을 헤아려 세심하게 배려하고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겠다. 이와 관련하여 미국, 영국 등의 국가들에서는 유가족들의 이러한 아픔을 고려하여 일찍이 범죄피해자에

대한 지원이나 보호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형사절차상 권리와 법적 지위를 보장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대표적으로 이들 국가에서는 피해자 영향 진술(victim impact statement) 혹은 피해자 의견 진술 (victim personal statement) 제도 등을 실시함으로써 형사사법시스템에서 피해자의 진술권을 보장하고 형사절차에 피해자의 참여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김지선, 2008; 박상식, 2006).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2017년도부터 법무부에서 범죄피해양형평가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이를 통해 피해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양형에 반영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이 또한 시작 단계로 본 제도가 제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따라서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형사, 사법 절차 안에서 충분히 전달할 수 있도록 국가에서는 보다 다양한 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유가족들은 망자가 사망한 후 다양한 행정적인 문제와 재산 정리 등으로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망자가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던 가장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본 연구 결과, 망자가 참여자의 남편, 아버지인 경우 망자의 사망 후 처리해야 하는 빚이나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된 현실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가능성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슬퍼할 겨를도 없이 생계 전선으로 내던져지고, 삶의 무게를 홀로 감당해야 하는 막막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험들을 통해 유가족들은 국가에서 어느 정도의 경제적, 심리적 지원을 해주기를 바란다. 우리나라에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근거하여 2009년부터 범죄피해구조금 제도를 실시해왔다. 이 제도의 취지는 범죄로 인해 사망하거나 장애 또는 중상해의 피해를 당했

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의 전부 혹은 일부를 보상받지 못했을 때 국가가 피해자나 유가족에게 일정액의 구조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살인사건 피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경우 이 제도에 근거해 유족 구조금을 청구할 수 있으나 상한액이 망자의 생전 월소득액의 48개월 분으로 정해져 있어 어린 자녀를 두고 있거나 부양해야 할 가족이 많은 경우 당장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유가족이 경제적인 토대를 마련할 수 있도록 단기간의 물적 지원을 넘어선 국가의 세심한 제도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이와 함께 유가족들의 진술과 같이 이들의 고통에 귀 기울이고, 보다 심층적이고 전문적인 심리지원이 가능한 전문기관의 수와 인력들을 늘릴 필요도 있어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토대로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을 위한 전문적 개입 및 정책적 측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지원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지원 매뉴얼의 개발 및 교육이 필요하다. 사건 후 유가족을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당연히 수사 경찰일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유가족의 고통을 이해하고, 유가족에게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에 대한 지침서를 개발하고 이를 교육시킬 필요가 있겠다. 이와 함께 유가족에 대해 심리적 개입을 하는 기관의 종사자들을 위한 교육 또한 필요해 보인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는 강력범죄피해뿐만 아니라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정신건강에 관심을 보이는 전문가가 적은 상황이다. 따라서 다양한 홍보와 교육을 통해 이들의 관심과 참여를 독려하고, 이들이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의 복합적인 심리적 고통을 보다 심층적으로 이해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을 대면하는 일반 대중과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들의 민감성을 증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가 필요하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세상과 타인에 대한 긍정적인 믿음이 산산 조각난 유가족들에게 타인의 단순한 호기심과 가벼운 위로의 말은 더 큰 상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일반인들이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게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교육과 홍보를 통해 주지하도록 할 필요가 있겠다. 셋째, 가해자는 여러 가지 이유로 감형을 받고, 국가로부터 보살핌을 받는데 반해 자신들은 형사, 사법체계에서 철저하게 외면당하는 경험을 하며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은 또 다른 분노를 경험한다. 피해자가 소송 및 양형 등 형사, 사법절차에 직접 참여하는 것은 범죄 피해에 대한 치유효과에도 일조한다고 알려져 있다(강석구, 박광민, 김재희, 2009). 따라서 이들이 수사, 공판 단계 등 형사, 사법 체계 전반에 걸쳐 피해자로서의 법적 권리를 행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도록 보다 다양한 법적 제도가 마련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의 의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에서는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을 대상으로 사건 후 삶의 현장에서 그들이 경험하는 바를 심층적으로 탐색하였다. 본 연구는 자발적으로 치료센터를 방문하여 심리치료를 받은 유가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이들 대부분이 망자의 부모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본 연구 결과를 전체 유가족의 일반적인 경험으로 일반화 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강력범죄 피해자는 최근까지 국내의 연구대상에서 제외되어 왔고, 실태 조사 및 정책 과제의 대상으로 등장할 뿐 이들에 대한 연구는 전무한 상태를 감안할 때(강은영, 박형민, 2008; 김상

회, 이태원, 1991; 박형민, 2003) 본 연구는 이들의 경험을 보다 생생하게 밝혀낸 첫 번째 시도이자, 이들을 연구대상으로 부각시킴으로써 차후 이들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밝혀진 유가족의 경험은 이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인 개입 방법을 수립하고, 관련 종사자들을 교육시키는데 폭 넓게 활용될 수 있으리라 판단된다. 둘째, 본 연구결과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의 경험에 다른 가족 구성원이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흥미롭게도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에게 다른 가족 구성원은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거나 직접적인 위로를 받기는 힘든 대상이지만 망자에 대한 좋은 추억을 공유하고 자신의 삶을 추스르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 중요한 지지 자원이었다. 본 연구를 통해 유가족이 삶의 현장으로 복귀하고 사건으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도출하도록 하기 위해 가족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을 이해하게 된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살인사건 피해 유가족들이 고통 속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영역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는 것을 발견했다. 이는 고통 속에서도 그 의미와 희망을 찾는 인간의 본질을 잘 보여주는 결과로 유가족들을 단순히 변화가 필요한 지원 대상, 심지어는 환자로 여기는 현장 실무자들의 선입견을 배제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 참고문헌

강은영, 박형민 (2008). 살인범죄의 실태와 유형별 특성: 연쇄살인, 존속살인 및 여성살인범죄자들 중심으로. 형사정책연구원 연

구총서, 11, 1-564.

김벼리 (2012). 남편을 자살로 잃은 중년 기독교 여성의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김상희, 이태원 (1991).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 13-168.

김지선 (2008). 피해자의견진술제도에 관한 연구.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7, 1-158.

김정경 (2013). 노년기 여성 생애담의 죽음의 의미화 양상 연구. 사회사상과 문화, 19(4), 251-289.

김혜숙 (2015). 노년기의 내세관·죽음준비도·영적 안녕감이 죽음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영향. 영성과 사회복지, 3(1), 81-108.

경찰청 (2017). 2016 범죄통계. 서울: 경찰청

박상식 (2006). 범죄피해자의 의견진술권에 관한 연구. 피해자학연구, 14(1), 1-45.

박정연 (2015). 사별경험을 중심으로 한 미술치료의 의미와 역할. 대전대학교 대학원 논문집, 15(2), 45-62.

박지영 (2010). 자살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의 생존경험에 관한 해석학적 현상학 사례연구. 정신보건과 사회사업, 36, 203-231.

박형민 (2003). 살인범죄의 실태에 관한 연구 (2).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1, 27-337.

오연주 (2008). 모(母) 사별 성인의 만다라 그림에 나타난 애도과정의 상징 연구: 우울 감소를 위한 만다라 미술치료에 관한 개인 사례. 한국예술치료학회지, 8(1), 1-21.

이명호 (2013). 가족관련 분석적 개념의 재구성, 가족우의에서 가족중심주의로. 사회사상과 문화, 28, 359-393.

장수지 (2013). 노년기 배우자 사별 후 적응과정에서의 개인적 성장. 한국과학기술정보

- 연구원, 65, 165-193.
- Amick-McMullan, A., Kilpatrick, D. G., & Rensnick, H. S. (1991). Homicide as a risk factor for PTSD among surviving family members. *Behavior Modification, 15*, 545-559.
- Amick-McMullan, A., Kilpatrick, D. G., Veronen, L. J., & Smith, S. (1989). Family survivors of homicide victims: Theoretical perspectives and an exploratory study. *Journal of Traumatic Stress Studies, 2*, 21-35.
- Amour, M. P. (2002). Journey of family members of homicide victims: A qualitative study of their posthomicide experienc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72*, 372-382.
- Asaro, M. R. (2001). Working with adult homicide Survivors(1): Impact and sequelae of murder. *Perspectives in Psychiatric Care, 37*, 95-101.
- Burgess, A. W. (1975). Family reaction to homicide. *American Journal of Orthopsychiatry, 45*, 391-398.
- Cohen, M. Z. (1987). A Historical overview of the phenomenologic movement, *Image, 19*, 31-34.
- Colaizzi, P. (1978).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t*, In R. Valle, & M. King. (Eds.).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 Doka, K. J. (Ed.). (1996). *Living with grief after sudden loss: Suicide, homicide, accident, heart attack, stroke*. Bristol, PA: Taylor & Francis.
- Englebrecht, C. M., Mason, D. T., & Adams, P. J. (2015). Responding to homicide: An exploration of the ways in which family members react to and cope with the death of a loved one. *Journal of Death and Dying, 73*, 355-373.
- Freedy, J., Resnick, H. S., Kilpatrick, D. G., Danksy, B., & Tidwell, R. (1994). The psychological adjustment of recent crime victims in the criminal justice system. *Journal of Interpersonal Violence, 9*, 450-468.
- Heidi, Z., Alyssa, A. R., Alesia, H., Benjamin, E. S., & Dean, G. K. (2009). Losing a loved one to homicide: Prevalence and mental health correlates in a national samples of young adults. *Journal of Trauma Stress, 22*, 20-27.
- Hertz, M. F., Prothrow-Stith, D., & Chery, C. (2005). Homicide survivors: Research and practice implications.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29*, 288-295.
- Horowitz, M. J., Siegel, B., Holen, A., Bonanno, G. A., Milbrath, C., & Stinson, C. H. (1997). Diagnostic criteria for complicated grief disorder.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54*, 904-910.
- Lim, H. K., Woo, J. M., Kim, T. H., Tang, J. C., & Choi, K. S. (2008). The reliability and validity of the Korean version of the Impact of Event Scale-Revised (IES-R-K). *Poster Session presented at the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Seoul, Korea.
- Lincoln, Y. S., & Guba, E. G. (1985). *Effective evaluation*. (4th ed.) San Francisco, CA: Jossey-Bass Publication.
- McDevitt-Murphy, M. E., Neimeyer, R. A., Burke, L. A., & Williams, J. L., (2012). The toll of traumatic loss in african americans bereaved by homicide. *Psychological Trauma : Theory, Research, Practice, and Policy, 4*(3), 303-311.
- Moustakas, C. (1994). *Phenomenological research*

- methods*. Thousand Oaks, CA: Sage.
- Murphy, S. A., Johnson, L. C., Wu, L., Fan, J. J., & Lohan, J. (2003). Bereaved parent's outcomes 4 to 60 months after their children's deaths by accident, suicide, or homicide: a comparative study demonstrating differences. *Death Studies, 27*, 39-61.
- Neimeyer, R. A., & Burke, L. A. (2011). Complicated grief in the aftermath of homicide: Spiritual crisis and distress in an african american sample. *Religions, 2*, 145-164.
- Omery, A. (1983). Phenomenology: A Method for nursing research. *Advances in Nursing Science, 5*, 49-63.
- Polit, D. F., & Beck, C. T. (2010). *Essentials of nursing research: Appraising evidence for nursing practice* (7th ed.). Philadelphia, PA: Lipincott, Williams and Wilkins.
- Redmond, L. M. (1989). *Surviving: When someone you love was murdered*. Clearwater, FL: Psychological Education and Consultations Services.
- Sharpe, T. L., & Boyas, J. (2011). We Fall Down: The african american experience of coping with the homicide of a loved one. *Journal of Black Studies, 42*, 855-873.
- Taylor, S. E., Welch, W. T., Kim, H. S., & Sherman, D. K. (2007). Cultural differences in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psychological and biological stress responses. *Psychological Science, 18*, 831-837.
- van Manen, M. (1994). 체험연구 [Researching lived experience]. (신경림, 안규남 역). 파주: 동녘. (원전은 1990년에 출판).

논문 투고일 : 2018. 03. 19

1 차 심사일 : 2018. 03. 23

게재 확정일 : 2018. 05. 16

##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homicide victims' families: A phenomenological study**

**Haesook Kim**

**Namyoul Lim**

**Hyejeen Lee**

Gwangju Smile Center

Chonnam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explored the psychological experiences of surviving family members of homicide victims. Nine family members of homicide victims, who could verbalize their experiences and agree to participate, were interviewed. The time between the interview and the homicide ranged from 6 months to 4 years, and all the homicide offenders were convicted prior to the study. The interview data were analyzed to identify meanings and themes using Colaizzi's method. Results showed that 472 meaningful phrases and sentences were extracted, which were subsequently organized into 48 formulated meanings, 24 clusters of themes, 16 emergent themes, and 6 categories. The six categories were related to the homicide victim, the participant, the family members, other people/the world, the offender/the offender's family, and realistic difficulties. For each category participants' experiences were described in detail. Finally,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Key words* : *surviving family members of homicide victims, Phenomenological study, In-depth interview, Colaizzi's method*